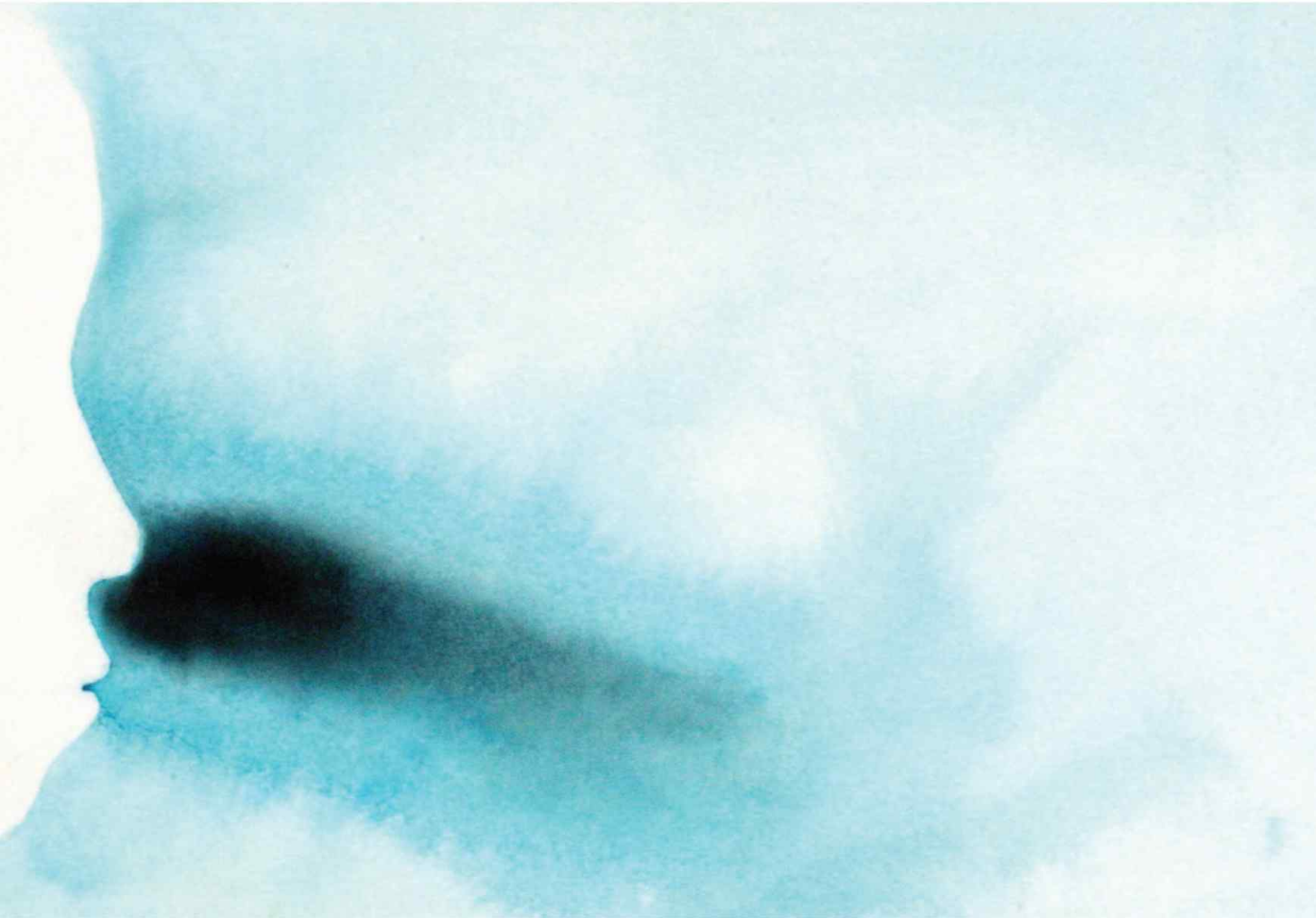


기독교윤리연구소<목회자-윤리> 연속심포지엄③

목회자와 교회정치

2013·5·9(목) 오후 2시~5시
청어람 소강당

주관 / 기윤실 부설 기독교윤리연구소



기독교윤리연구소<목회자윤리> 연속심포지엄③

목회자와 교회정치

발행일 _ 2013년 5월 9일

발행인 _ 홍정길

편집인 _ 조제호

발행처 _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

Tel_ 02-794-6200 Fax_ 02-790-8585

E-mail_ cemk@hanmail.net

www.cemk.org

* 본 자료집은 창조세계를 돌보는 마음으로 재생종이에 인쇄했습니다.
표지는 고지율(재생펄프 함유율) 55%(사용전)의 양코르지이며, 내지는 고지율 20% 이상의 그린라이트지입니다.

* 본 자료집은 기윤실 홈페이지 자료실 또는 기윤실 블로그에서 행사 이후 PDF 파일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독교윤리연구소<목회자-윤리> 연속심포지엄③

목회자와 교회정치

2013·5·9(목) 오후 2시~5시
청어람 소강당

주관 / 기윤실 부설 기독교윤리연구소

행사 순서

기독교윤리연구소 <목회자·윤리> 연속심포지엄 ③

목회자와 교회정치

시간	프로그램	진행 및 강연자
오후 2:00-2:10	환 영	이장형 운영위원 (기독교윤리연구소, 백석대 기독교윤리학 교수)
2:10-2:30	기조발제	임성빈 교수 (장신대 기독교와문화)
2:30-3:05	주제 발제 1	지형은 목사 (성락성결교회)
3:05-3:15	휴식시간	
3:15-3:50	주제발제 2	이상민 변호사 (법무법인 소명)
3:50-4:25	주제발제 3	배종석 교수 (고려대 경영학과)
4:25-5:00	질의응답	

목차

기독교윤리연구소(목회자윤리) 연속심포지엄③

목회자와 교회정치

■ 기초발제

한국교회의 위기와 교회정치 :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임성빈 교수 _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와문화

07

■ 주제발제

1. 한국교회의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

지형은 목사 _ 말씀삶공동체 성락성결교회

15

2. 교회 내 분쟁의 사회법 절차에 따른 해결에 대한 검토

이상민 변호사 _ 법무법인 소명, 기독교법률가회 사회위원장

25

3. 한국교회 정치회복을 위한 원리와 제도

배종석 교수 _ 고려대 경영학과, 기독교경영연구원 원장

37

■ 기윤실 교회신뢰운동 소개

55

■ 기독교윤리연구소 소개

56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소개

한국교회의 위기와 교회정치 : 장로교회를 중심으로¹⁾

임성빈 교수 |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와문화, 기독교윤리연구소 운영위원

한국개신교는 지난 1세기 동안 놀랄만한 발전을 거듭해 왔다. 1세기만에 이만한 성장을 이룬 교회를 금세기에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양적인 성장에 따른 정치·경제·사회문화 일반에 걸친 한국 기독교의 영향력도 괄목할 만하다. 이와 함께 해외를 향한 선교의 열정도 매우 인상적이어서 수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세계 각국에서 활동 중이다.²⁾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과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걱정하고 있다. 그러한 걱정이 나올 만큼 한국교회는 위기에 놓여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자랑하던 교회성장세가 무척 완만해졌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³⁾ 또한 활발한 해외선교도 뜨거운 열정에 비하여 현지의 문화와 역사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등의 방법

1) 본 심포지엄은 '목회자와 교회정치'라는 대 주제 아래 기획된 것으로 교회정치를 논할 때도 가능한 다양한 한국교회의 정치 제도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발제자가 몸담고 있는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정치를 논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에서 장로교회가 차지하는 현실적 비중과 또한 타 교단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장로제도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교회의 현실을 반영함에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대표회장 박종순 목사)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선교사는 14,102인이며 그 중 장기선교사는 12,594인 단기선교사는 1,418인이며 목사는 12,295인 평신도는 2,963인이다.(2005년12월)

3) 통계청이 2006년 5월 25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 인구가 지난 10년 동안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천주교는 같은 기간 74.4%가 늘었다. 이 같은 통계는 표면 조사가 아니라 전 가정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인구조작 총조사 결과인데, 3대 종교 중 기독교만 유일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기독교 인구는 876만6000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14만4000명 줄었다. 불교는 1072만6000명으로 3.9% 늘었고, 천주교는 514만6000명으로 10년 전 295만 1000명보다 219만 명이나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한목협 통계에 의하면 2012년 현재 19세 이상의 성인 인구 중 기독교인이 22.5%, 불교인 22.1%, 천주교인 10.1%로 나타나고 있다. 1984년 이래로 기독교인 비율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1984년 17.2%, 1989년 19.2%, 1998년 20.7%, 2004년 21.6%, 2012년 22.5%). 불교인 비율은 2000년대 중반까지 증가하다가 최근에는 낮아지고 있다. 가장 괄목할 성장은 천주교로서 교인 비율이 지난 30년간 거의 두 배로 늘어났다(1984년 5.7%, 2012년 10.1%). 2004-2012년의 교세 증감을 보면 천주교와 기독교는 각각 1.9% 포인트와 0.9% 포인트 증가 했지만, 불교는 4.6% 포인트 감소했다. 어쨌든 이제 한국 기독교인(기독교+천주교)은 한국인의 1/3에 이르고 있으며, 기독교인만 하더라도 인구의 1/5을 차지하고 있다. 두 통계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은 19세 이하 연령층에 비기독교인 인구가 더욱 많기 때문이라는 것과 교회에 출석하지 않지만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상의 문제들로 인하여 적지 않은 우려를 낳고 있다.

시민사회의 성숙시대를 맞이하여 이제는 사회의 각계각층에서도 나름대로의 문제인식에 따라 자신이 가진 전문적 역량을 내어 놓으면서 다양한 자발적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만일 오늘의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을 기초로 한 영적갱신을 이룩하지 못하고 이익공동체로서의 면모를 나타낸다고 한다면 시민운동단체로서의 사회적 영향력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사회적 영향력의 감소, 그 자체가 교회의 본질적이고 우선적인 관심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교회를 향한 사회의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선교의 길을 가로막고 교회의 교회됨에 근본적인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지 아니할 수 없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사회 윤리적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심각한 일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의 우선적인 과제 중 하나는 분명히 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도와 교회공동체 내에서의 상호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다. 신뢰도의 성장은 곧 지도력의 회복을 동반한다. 진정한 지도력의 회복은 신뢰도의 회복을 기본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사실 목회자와 장로는 현실 교회장치와 교단정치에 있어서 교회의 내부적 결속력(cohesiveness)과 대사회적 지도력을 확보하는 데에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정치, 그중에서도 목회자와 장로의 역할, 특별히 장로로서의 책임과 지도력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것이 교회의 대사회적, 또한 교회내의 상호신뢰도를 신장시키는 일에 핵심적인 영역이자 우선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⁴⁾ 한국교회가 여러 의미에서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구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 인구의 1/5에 달하는 교인수와 교회가 동원할 수 있는 물질 자원의 잠재역량은 여전히 크다. 이러한 잠재역량이 건설적인 영향력으로 발현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 교회와 교단의 건전한 정치이다. 정치는 우리가 가진 자원을 권위 있게 배분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와 교단의 현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설적 정치보다는 개인/지역/학연/정파적 집단의 유익을 위주로 하는 파당적 정치의 잉여 현상이 보편화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현실 인식은 교회의 교회됨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회적 섬김역량 강화에 관심하는 우리들에게 교회정치에 대하여 더욱 건설적인 관심을 갖도록 도전한다.

교회정치에 대한 관심은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이 신앙인다운 신앙인 됨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선적 관심이기엔 신앙인 된 우리는 그 사랑의 실천을 위하여 도움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적확하게 도출해야 할 과제를 가진다. 이때 우리는 교회라는 구조적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분자들과 그들의 역할을 분명히 파악하여

4) 지금까지 목회자의 영향력과 책임에 대한 논의의 빈도에 비하여 한국교회의 교회정치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로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인식 때문이기도 하다.

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한다. 그것은 힘(power)의 사용과 관계되는 정치과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오늘 한국교회의 지도력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힘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비본질적 목표에 전용하고 있다는 비판과 의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장로의 역할과 상호보완적인 유기적 관계는 교회정치의 핵심적 요소이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현실과 비판은 교인다운 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교회의 정체성을 구조적 차원에서 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지도력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동시에 말하고 있다.

목사와 장로 그리고 만인제사장⁵⁾

종교 개혁의 정신을 따르고 있는 한국 장로교회는 하나님께서 목사와 장로를 포함하여 모든 교인을 사역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사실(롬1:6-7)을 기억하여야 한다. 이른바 “평신도”와 “교역자”의 구별은 담당하는 기능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예컨대 말씀과 성례를 주요 사역으로 하는 목사는 필수적인 학문적 배경과 자격이 요구되므로 대학과 신학대학원에서 교육 과정을 갖춘다. 그리고 소속된 교회의 당회와 해당 노회와의 언약적 관계 아래에서 목회자 후보생으로 훈련 과정을 수료한 후, 말씀과 성례전과 당회를 인도하는 특수한 교역의 책임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안수를 받는다. 교역자와 평신도와의 관계성에 대하여 개혁신학적 관점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제사장직(Priesthood)은 교회의 모든 회중에게 해당되는 직책(office)이다. 즉 모든 믿는 이들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다른 어떤 제사장의 중보 없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셨으므로 모든 믿는 이들은 스스로 회개하고 또한 용서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또한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들 위에 임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적 역할을 담당한다.

(2) 모든 믿는 이를 향한 하나님의 제사장적 부르심과 더불어 안수(Ordination)를 통하여 특별한 기능과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시는 직분도 있다. 안수는 초대 교회로부터 시작된 예식으로서(행 6:6; 13:3; 딤후 4:14; 5:22), 성령께서 공동체의 선을 위하여

5) 장로정치에 대한 내용은 필자의 줄고, “장로교회 정치해설”, 교회를 섬기를 청지기의 길 II(성안당, 2008), 192-202에서 주요한 내용을 인용한 것임.

믿는 이들에게 은사를 내려 주신다는 성경 말씀에 기초한다(고전 12:4-11). 즉 교회는 특별한 직무와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은사들이 안수를 통하여 교회의 직무를 감당할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짐으로써 그들을 “구별하여” 직분자로 세운다. 장로교회 정치의 핵심은 성령께서 부여하시는 특별한 은사의 기능을 인정하고, 동시에 그 기능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한다(고전 12, 엡 4).

안수를 통한 특별한 은사와 기능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에게 주어졌다. 목사는 말씀과 성례전의 담당자로서 복음이 만민에게 전달되어 기쁨과 공의가 교회와 세상에 충만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러한 역할을 위해 목사는 연구와 가르침과 말씀 선포에 힘쓰며, 세례와 성만찬의 성실한 집행과 함께 기도에 전념하여야 한다. 목회자의 역할과 직무는 모든 회중과 더불어 이루어지지만 특별히 장로와 집사들과 함께 행하게 된다. 여기에서 **“함께 행한다”**는 것은 짐을 나누어진다는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회중의 참여를 극대화한다는 면에서 적극적 의미를 지닌다. 이는 만민을 제사장으로서 부르시는 그 소명에 합당한 응답이기 때문이다.

한편, 때때로 이 **“함께 행함”**의 원리가 동역하는 사역자들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즉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과 동역자의 역할에 대한 오해, 혹은 자신이나 동역자의 역할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 인하여 갈등 상황을 유발할 수도 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들이 이러한 갈등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주로 목사와 그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인 장로 사이에서 각자의 역할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공동체의 유익과는 상반되는 결과들을 불러오고 있다.

그러므로 장로교회의 기본 신학에 따라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정체성과 역할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사역자들간의 관계와 사역, 즉 정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이다. 이러한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이해는 무엇보다도 장로교회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장로교회 정치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장로교회의 정치구조

장로교 체제로 교회가 운영된다는 것은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개 교회들은 치리회, 즉 당회, 노회, 그리고 총회를 통하여 하나의 교단을 이룸으로써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 장로교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연결되어 있다. 장로교회의 운영조직은 권위를 부여하는 방법과 권위의 소재에 있어서 다른 교단들과 구별된다. 장로교는 회중교회와

같이 회중에게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공회와 같이 감독 한 사람에게 있지도 않으며, 노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안에 그 권위가 존재한다. 즉 **장로교의 조직은 회중적이지도 않고, 군주적이지도 않으며, 회중의 대의를 핵심으로 하는 대표 제도임을** 알 수 있다. 대의 정치의 대표적 구성과 기본적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노회 : 노회는 장로교회의 기본이 되는 행정기관이다. 노회의 권위는 개 교회와 상회 행정기관의 양방향으로 권위적 작용을 한다.
- (2) 당회 : 장로교회의 사역은 각기 특정한 장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노회가 개 교회에 위임한다. 그러므로 개 교회는 당회의 직접적인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 (3) 총회 : 총회는 장로회의 최고 치리기관이다. 총회는 일 년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가지고 노회에서 선출된 목사 와 장로가 비례적으로 동일한 수로 구성된다.
- (4) 개교회 : 개교회는 소속된 지역에서 교회의 임무를 감당하기 위한 주된 기관이다. 개 교회에서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와 가르침을 통하여 만나며, 성례전에 참여 하며, 지역사회나 국내외 선교에 참여하고 보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기회를 얻는다.

이러한 구성과 역할은 장로교의 정치체제와 원리를 함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장로교 정치체제의 원리

장로교 정치체제는 질서(Order)와 열정(Ardor)의 조화를 모색한다. 장로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공동의 선을 모색하기 위해서 질서를 중요시하며, 헌법에 의하여 운영 된다. 이러한 전통은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전 14:40)는 사도 바울의 교훈에 근거한 것으로 질서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교회가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질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수동적이거나 제도에 얽매어 관료화되는 것을 지양하며 성령이 허락하시는 열정과의 조화를 지향한다. 이 원리와 같은 맥락에서 전통적인 장로 교회가 지니고 있는 "역사적인 교회 정치의 원리(The Historic Principles of Church Government)"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몇 개의 서로 다른 회중들이 하나의 그리스도 교회를 이룬다.

- (2) 교회의 상회나 그 대표가 하급 치리회를 다스려야 한다.
- (3) 다수가 다스려야 한다.
- (4) 고발과 상소는 하급 치리회에서 상급 치리회로 상정되어야 하며 최종 결정은 “전체 교회의 공동의 지혜와 연합된 의사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역사적인 교회정치의 원리를 장로교회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미국 장로교회(PCUSA)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 있다.

- (1) 미국 장로교 개체 교회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집단적으로 다 한 교회를 이룬다.
- (2) 이 교회는 장로들(presbyters), 즉 목사(minister)와 장로(elder)에 의해 치리된다.
- (3) 이 장로들이 함께 모여 단계적인 치리기관이 (전통적으로는 사법관할, 혹은 법정으로 불리움) 형성된다.
- (4) 장로들은 단순히 교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뜻을 찾아 대표하려고 노력한다.
- (5) 모든 결정은 치리기관에서 토론의 기회를 가진 다음에 투표로써 하고, 다수가 처리하게 한다.
- (6) 상회기관은 하회기관을 관찰하고 통제할 권리를 가지며, 논쟁적인 문제를 문의나 불평이나 상소에 의하여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 (7) 장로들은 오로지 치리기관의 권위에 의해서만 안수 받는다.
- (8) 교회의 관할권은 치리기관에 모인 장로들이 함께 행사함으로써 함께 나누어 갖는 권한이다.
- (9) 치리기관은 교회의 헌법이 부여한 의무와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을 때 발효하는 모든 행정적 권위를 갖는다.

이중 주목할 것은 (4)항이다. 이것은 장로교 치리에서 복음을 위한 적극성과 협력성을 강조하고 있다. 명확한 이해를 위하여 영어 원문을 참고해보자. “Presbyters are not simply to reflect the will of the people, but rather to seek together to find and represent the will of Christ.” 이 진술은 **장로교회의 치리란 민의(the will of people)를 대변하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뜻(the will of Christ)을 찾고 그 뜻을 나타내기를 위하여 노력하는 적극적 원리를 함축하고 있다.** “장로교회는 대의정치”(G-6.0170) 제도를 따르지만, 그 제도의 목적은 근본적인 성경의 원리, 즉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빌 1:20) 갈망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살전 2:4)

적극적 성경적 원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4)항의 원리는 **동역자로서의 협력성**을 내포한다. 그리스도의 뜻을 발견하고 그를 나타내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장로교회의 정신은 소수의 이익이나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Together) 이루어 가는 것임을 보여준다. 즉 장로교회 대의정치의 진정한 의미는 “함께 그리스도의 뜻을 찾아” 힘써 나아가는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하나님의 청지기 됨에 있다.

한국교회 교회정치의 과제:

1. 종교개혁 정신회복

종교개혁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 중 하나는 성경이 증거하는 **평신도 지도자의 역할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의 제자였던들 사도들과 더불어 평신도 지도자들을 증거하고 있으며, 구약성경 또한 선지자와 백성의 지도자들이 평신도 출신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러한 정신을 잃어버리자 칼뱅은 제네바에서 2세기 초대교회를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성경 말씀에 합당한 교회제도를 주창하였고 이것이 장로교회의 모범이 되었다.

2. 장로직분의 구별성

목사와 함께 다른 이들도 함께 부름을 받았으나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는 구별이 있다. 특히 장로와 목사 두 직분 사이에는 분명한 구별이 존재한다. 장로와 목사는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목적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면에서 동일성을 지니나,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순결”을 위하여 각각 감당하는 구체적 책임과 사역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별성”을 지니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장로는 “말씀과 교리”에 전념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목사직과 구별된다. 이 부분은 말씀 선포와 성례전을 담당하는 목사들에게 요구되는 것으로 이 사역을 위하여 목사는 일정한 과정의 교육과 특별한 훈련과 신실한 준비를 필요로 한다(딤후2:15).

그런 의미에서 신령한 말씀과 성례전을 담당하는 목사는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그들이 가진 지위나 기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며 또한 목사직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들이 수행한 훈련의 과정 때문이다.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순결”을 위하

여 부름 받아 헌신하는 장로 역시 명예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장로가 존경받아야 할 이유 또한 지위나 업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며 또한 장로직을 감당하기 위하여 치러야 할 **섬김과 희생** 때문이다.

여기서 명확히 이해할 것은 개혁신교회의 근본적 정신은 만인을 하나님과의 만남(an encounter with God)으로 인도하는 신앙에 기초하고, 성령께서 신앙으로 이끌어주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는 믿음에 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결코 특별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계급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독특한 위치에 있으며 그 위치는 결코 높고 낮은 위계의 관계가 아닌 것이다.**

3. 집사직의 회복, 여성참여와 위계적 권위주의 극복

한국장로교회의 직제는 1907년에 선교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장로교직제에 기초한다. 한국장로교회의 역사와 전통이 헌법을 통하여 비교적 잘 보존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평신도교역직에 대한 이해가 약해서 직제가 권위주의로 흐를 위험성이 있다. 항존직과 임시직이라는 구분도 다른 개혁신통 안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장로개념에 대해서는 가르치는 장로로서의 목사와 치리장로를 포함시키는 “두 장로설”을 따르고 있다. 집사직은 원래 교회 내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의 집사직에 대한 이해는 너무 교회안의 사역에 국한되어 있다. 더욱이 안수집사직이 마치 장로안수를 기다리는 대기직으로 이해되는 것도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여러 형태로 제한받고 있는 현실은 여성시대를 맞이한 21세기 한국사회에서 교회정치가 선도적 역할을 함에 결정적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확산되어 가는 민주주의적 참여 요구와 대의정치적 장로제의 조율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장로교 전통의 영향 아래에 있는 한국교회들에 도전하고 있다. 여성과 청년층의 정치참여 요구와 이른바 항존직으로서의 장로제도에 대한 임기제 도입의 요구 등이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는 도전과 과제들이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교단에 대한 소속감과 정체성이 약화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과연 교단에 따른 차별적 정치체도와 보편적인 민주정치 사이의 조율도 한국교회가 직면한 정치적 과제라고 볼 수 있다. 

한국교회의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

지 형 은 목사 | 말씀삶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서울신학대학교 겸임교수

1. 들어가는 말

정치란 말이 참 애매하다. 한국 교회 영역에서 이 말을 사용할 때 좁은 뜻으로 하면 총회장 직책을 중심으로 선거와 관련하여 돌아가는 교권 구조의 작동을 말한다. 일반 사회 영역에서 정치하면 금방 선거를 떠올리는 것에 견준 것이다.

그러나 넓은 뜻으로 하면 교회 영역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을 성경 말씀에 따라 조화롭고 아름답게 다스리고 꾸러가는 과정을 가리킨다. 앞에서 말한 좁은 뜻의 정치도 물론 여기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정치적 존재'라고 말할 때처럼 넓은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넓은 뜻으로 정치라는 말을 생각하는 게 이 심포지엄에 좋다고 본다. 좁은 뜻으로 보면 주로 선거와 연관된 문제에 제한된다. 넓게 봐야 한국 교회의 현재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 교회의 정치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문제점을 사람에 따라 달리 볼 수 있겠다. 인간 사회의 어느 집단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사람도 있겠다. 기독교 이천 년 역사의 사례를 볼 때 오늘날의 한국 교회 정치가 특별히 더 부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사람도 있겠다. 반면, 오늘날의 현상이 아주 심각해서 '한국 교회는 침몰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다.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점 하나는 현재 한국 교회의 부정적인 문제점들이 대부분 좁은 뜻의 '교회 정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며, 그 부패 정도가 상당히 심각해서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이다.

한국 교회의 정치 문제를 어떻게 살피야 할지 쉽지 않다. 더구나 정치를 넓은 뜻으로 해 놓고 나니 더 그렇다. 이리저리 생각하고 상황을 분석하다가 '현실적으로' 정치의 축 역할을 하는 세 가지를 골랐다. (1)돈, (2)법, (3)성역이다. 세 가지 점을 중심으로 살피겠다.

2. 돈

2-1. 두 가지 예를 들어 한국 교회 정치에서 돈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해 본다. 하나는 교계 일에서 지급되는 교통비 또는 거마비에 대한 것이다.

내가 속한 교단은 총회와 지방회의 두 단계로 교단이 조직돼 있다. 지방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로 목사와 장로들인데, 회의나 이런저런 공적인 일로 모일 때 지방회 재정에서 교통비가 지급된다. 몇 년 전부터 교통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방회의 공적 재정에서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개 교회나 지방회나 총회의 일은 기본적으로 디아코니아 곧 섬김이다. 목사나 장로라면 교통비 정도는 자기가 쓰면서 섬기는 게 바람직하다. 아니 마땅하다고 본다.

총회 영역으로 가면 문제는 조금 달라진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모임이 있을 때 멀리는 부산에서도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비용이 꽤 들 수도 있다. 몇 만원은 사람에게 따라서 적잖은 비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총회적인 모임이라면 적절하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구분돼 있는 지방회는 그렇지 않다. 지역이 그리 넓지 않다. 자기 차를 이용하는 공공교통 수단으로 이동하는 비용이 별로 들지 않는다.

내가 속한 교회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 안에서 서울중앙지방회에 있다. 공적인 일로 모일 때 지방회 재정에서 교통비가 지급된다. 지금은 교통비가 균등하다. 한참 전에는 지방회 안의 부서에서 인사부처럼 '힘 있는 부서'에는 교통비가 더 많이 지급되었다. 말하자면 이름이 교통비지 수당 같은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5만원으로 통일되었고, 이것이 3만원으로 내려갔다. 성결교단 총회에서 재정 문제가 터지면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던 교통비가 수도권에서는 2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올해 2월 정기 지방회에서 총회의 교통비 금액을 감안하여 3만원이 2만원으로 조정되었다.

교통비를 지급하지 말자는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분들 생각은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지방회 모임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 생각에는 교통비 없어서 일하지 않을 사람들이 지방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참 좋으리라고 본다.

문제의 요점은, 공돈을 쓰는 구조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될 수 있으면 '줄여야' 한다.

2-2. 다른 하나는 재정과 연관된, 이른바 '쓰리쿠션'이다.

내가 속한 지방회에 여러 기관들이 있다. 어떤 것은 교단법에 규정된 공적인 기관이고 또 어떤 것은 목회자나 평신도 지도자들이 모여서 만든 임의단체다. 그런 모임을 유지하거나 행사를 진행할 때 지방회 내의 개 교회에 찬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상회비를 내는데, 지방회비와 총회비다. 찬조금은 공식적인 상회비 외에 준조세 성격을 갖기도 한다.

우리 지방회에서는 여러 해 전부터 찬조금을 요청하지 말자는 공적인 의견이 있었다. 지방회장을 맡는 분들도 그런 의견과 의지를 표명해 왔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는다. 그 가운데서도 장로들이 모인 모임이 문제인 경우가 있다.

장로들이 개 교회에서 당회를 구성하면서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고, 지방회에도 대의원으로 활동하니까 현실적으로 힘이 있다. 그래서 장로들로 구성된 모임에서 개 교회에 어떤 재정 찬조를 요청할 때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장로들 가운데 개 교회의 현실적인 구조를 훤히 꿰뚫고 그걸 능숙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에 따라서 재정의 지출 구조가 다르지만, 아무래도 담임목사가 일정하게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데, 담임목사면 누구나 자기 교회의 장로들에게 신경을 쓰게 된다. 그래야 되기도 한다. 그래서 지방회 내의 모임들에서 개 교회로 찬조금을 요청하면서 요청받는 교회의 장로들을 통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이른바 '쓰리쿠션'을 돌려서 요청하는 것이다. 목사들이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친 헌금이 교회의 공적인 재정이다. 이 재정에서 정당하게 또 마땅히 찬조해야 하는 것이라면 장로들 모임이 아니더라도 해야 한다. 정당하고 마땅하지 않은 것이면 장로들이나 목사들 모임이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2-3. 위의 두 가지 예에서 한국 교회 정치의 문제점에 대한 중요한 점을 짚는다. 가장 분명하게 직접 말하면 이렇다.

‘돈, 돈 문제다.’

일반 정치를 생각해 보라. 돈 없이 정치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돈이 있어야 정치를 할 수 있다. 교계의 정치도 현상적으로는 똑같다. 돈이 정치의 중심 관심사다. 그 가운데서도 ‘공돈!’ 공돈이 많으면 탈이 날 수밖에 없다. 공돈 쓰는 재미에 맛이 들린 사람들이 문제다.

정치의 부정적인 현상을 생각하면서 ‘정치꾼’이란 말을 쓴다면 공금을 공돈으로 쓰는 데 재미를 붙이면서 정치꾼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다. 부정적으로 교계 정치를 배운다는 것은 공금을 움직이는 못된 방법들을 배우는 것이다. 본격적인 정치꾼은 공금을 공돈으로 쓰려고 사람을 연결하고 주고받는 일을 조직화하고 그 구조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집단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나는 한국 교회의 정치에서 발생하는 비성경적인 문제점들을 논할 때 공적 재정 곧 돈 문제를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현실적인 해결책이나 대안이 나올 수 있다. 교계 정치의 문제점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은 교계의 공적 재정 규모를 줄이는 일이다. 지방회(노회), 연회, 총회의 재정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일반 영역의 표현을 빌어 말하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교단마다 상황이 다르다. 고교회적인 교단처럼 상회의 권한이 강한 교단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각 개교회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회중제 정치 형태의 교단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이다.

개 교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종류의 상회나 교계 기관의 재정에 대한 표준적인 감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대안 중 하나일 수 있다. 사회적인 기준에서 높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가진 감사 수준을 교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할 것이다.

3. 법

정치는 법의 문제와 떼어 수 없이 연관돼 있다. 법의 문제를 교계 선거를 대표적인 예로 삼아 살펴본다. 정치,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선거가 중심이다. 교계 선거의 문제에서 돈과 정책과 특권을 살펴보면 좋으리라 본다.

3-1. 먼저 선거에서 돈 문제다. 또 돈이 주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선거 비용을 한편으로는 엄격하게,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성 있게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관건이다. 되도록 선거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는 건 말할 것도 없다. 비용이 들지 않는 선거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돈 문제에서 위반이 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실제적으로 만들어놓고 사회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는 문서에 출마자 본인의 서명을 받으면 좋겠다.

공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중요한 까닭은 선거법을 위반했을 때 실질적으로 처벌하려는 것이다. 교단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말이다. 교단적인 처벌에서는 교계 구조의 중심을 찢어야 한다. 처벌 조항에 총회대의원이나 노회(지방회나 연회)대의원을 몇 년간 금지하거나, 교단 안의 공적인 직무를 맡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주 효과가 클 것이다.

두 번이나 세 번 이런 일을 위반했을 때, 교단 내의 모든 공적인 직책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말하자면 ‘아웃시키는 제도’도 연구할 만하다.

3-2. 정책에 대하여. 교단의 선거에서 정책을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문제는 비용과 연관돼 있다. 사람들이 모여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하든 신문이나 여러 매체에 광고를 하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적으로 관리하든 자료를 만들든 정책을 알리는 데는 비용이 든다. 이런 비용을 최소화하고 공공화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한다. 오늘날의 인터넷 환경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비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3. 특권에 대하여. 교계 선거와 연관된 정치 과잉이나 부작용을 줄이려면, 총회 임원과 연관된 특권 현상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총회장 또는 어떤 직책을 거친 뒤에 자연스럽게 연관되는 이런저런 특권들이 있으니 선거가 더 과열된다. 그러니까 예컨대, 총회장을 지낸 뒤 어떤 직책을 맡지 못한다고 못 박으면 좋을 수 있다.

우리 교단의 경우 총회장을 지내고 나서 교단신학대학교의 이사장을 맡는다거나 기타 여러 중요 직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어느 교단이나 비슷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다. 한 조직의 수장을 맡으면서 경험한 노하우와 인맥을 다른 영역을 섬기는 데 유용하게 쓴다면 좋은 것이니까.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그것이 특권이 되어 있으니 문제다. 가능한 대로 이런 연결고리를 끊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선거로 뽑히는 직책에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는 특권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한다.

3-4. 위의 세 가지 문제와 연관하여 명백하고 의도적이며 지속적인 교회법 위반이 있을 때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교회법을 발전시켜야 한다. 처벌에 대한 법적 장치도 좀 더 치밀하고 실제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

제는 교회법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사회법으로 다루는 일이다. 깊이 논의하고 충분히 토론해야 할 중요한 문제다.

일반적으로는 교계의 다툼을 일반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을 비성경적으로 본다. 내 생각을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관점이 늘 바른 것은 아니다. 전체적이며 일반적으로 보면 잘못된 관점이다. 교회적 영역의 문제를 사회법의 다툼으로 가져가는 것을 기독교 신앙과 신학적 관점으로 깊이 검토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교계의 징계가 별 힘이 없을 때가 많다. 교회법의 최종 단계까지 가도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교회법에 강제적인 공권력이 없어서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사회법이다.

기독교 신학적으로 볼 때 사회법은 교회법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도구다. 교계에서 사회법에서 다루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또는 교회법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방어적인 조치다.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보아도 사회법의 다툼을 경원시하는 것은 충분한 근거가 없다. 기독교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오늘날의 일반 법조계를 이끌고 간다는 적극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현장과 연결하여 신학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3-5. 일반 사회법이 종교 문제를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다룰 것인가를 연구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일반 언론이나 사회적 영역에서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 문제를 비교적 성역 없이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이 1990년대 후반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상황은 사회법 쪽에서 종교 문제를 다루는 합리적인 기준이나 판례가 성숙돼 있지 않다. 사회 전체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는 걸 감안하면 이 문제를 놓고 일반 법 전문가들이 종교 영역의 (신)학자들이나 교회법 율사들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해야 하리라 본다.

4. 성역

4-1. 이른바 '성역'에 대한 주제는 정치보다는 목회가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 영역 안에서 '정치'와 '목회'를 대비시키면 이 두 단어 모두 좁은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정치를 넓게 보면 교회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고 목회라는 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좁게 보면 목회는 다른 말로 목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바, 예배를 중심으로 기도와 말씀의 가르침과 전도 등 신앙의 영역에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뜻한다. 이럴 경우 정치는 주로 현상적인 조직이나 제도, 건물이나 재정의 관리 등에 대한 것이다. 교회론적인

표현으로 하면 목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와 주로 연관된 점이고 정치는 보이는 교회에 주로 연관된다고 말해도 좋겠다.

한국 교회에 목양이 중심이 되게 해야 한다. 정치 과잉 현상이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교권의 정치 구조가 강고하고 집단의 부정적 결집력이 깊고 넓어서 언론의 사회면에 보도되는 명백한 비리조차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42. 사람 사는 사회의 조직들은 그 조직의 현실적인 자리에 따라 성격이 다르다. 한 국가의 공적인 구조를 끌고 가는 공직의 조직 구조는 일반 회사의 조직 구조와는 다르다. 교육계의 구조, 법조계의 구조, 연예계의 구조, 학계의 구조 등에는 나름으로 독특한 특징이 있다.

물론 모든 조직 구조에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점이 있다. 공평성, 정직성, 투명성 등과 같은 것이다. 조직의 구성과 유지 발전은 공통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각 조직이 가지는 특성을 잘 살피서 살려가는 데 있다.

이런 점에서 교계의 조직 구조를 살펴보자. 먼저, 교계라는 영역은 그 기본이 개 교회라는 점을 생각하자.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하나의 교회가 교계라는 넓은 영역의 뿌리요 기초다. 교회는 사회 현상적으로 얼마든지 관찰이 가능하고 조직과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면으로 보면 교회라는 조직이 가지는 독특성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성역의 문제다.

신학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적어도 '교회의 정치'는 거룩한 교회법에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교회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정치 형태에서 민주적 대의정치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이 디는 아니다. 성경은 절대적 권위의 질서에 대하여 말한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인데, 이 권위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성경 내용이다. 그런데 성경 내용을 교회 현실에 적용하는 게 쉽지 않다. 해석과 과정이 필요해서다.

43. 한국 교회의 정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출구를 찾으려면 크게 두 가지 정치 형태를 살피며 장단점을 판단해야 한다. 하나는 성역을 인정하는 형태며 다른 하나는 되도록 성역을 인정하지 않는 형태다.

비교적으로 성역을 많이 인정하는 교회의 정치 형태는 이른바 '고교회적인 교회 구조'를 말한다. 가톨릭이나 성공회처럼 성직의 직제에서 단계별로 항구적인 직책이 존재하는 교단이 그런 경우다. 이런 정치 형태의 장단점이 있다. 단점부터 말하면, 이런 교회 구조에서 성역 안에서는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영역이 타락하게 되면 제도장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장점도 있다. 어느 정도 이상으로 기독교적으로 훈련받은 헌신된 지도자들이 그 영역에서 일하게 되는데, 이들을 통해서 상당한 정도까지 성경적인 가치 체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비교적으로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 정치 형태는 침례교나 독립교회 등인데, 여기에도 장단점이 있다. 가장 큰 단점은 개교회주의의 함정에 빠진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신학적 명제를 사역 현장에서 구현하기가 쉽지 않다. 장점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가진 오늘날의 세계 구조와 정신에 잘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유연성과 가변성이 뛰어난 것도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새로 만들어서 사역을 진행하다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교회의 정치 형태에서 이 두 가지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 교단이나 개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특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가 장점으로 작동할 수 있고 반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두 정치 형태의 장단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끊임 없이 단점을 경계하고 장점을 발전시켜가야 한다는 것이다.

5. 나가는 말

최근 한목협에서 주관한 전국민종교의식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큰 위기 직전 상황에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우선 종교사회학적으로 이런 상황이 명백하고, 다음으로는 교회 내적 현상에 대한 신학적인 분석으로 볼 때에도 퇴조 또는 위기 현상이 분명하다고 보인다.


다른 각도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한 가지는 역사적인 인식이다. 기독교 이천년 역사에서 보면 현상적인 교회는 언제나 부흥과 쇠퇴를 반복해왔다. 이런 부침은, 당연한 일이지만, 교회 내적인 상황과도 연관이 있지만 중요한 요인 또 하나는 시대 구조의 변화다. 시대 흐름에서 큰 틀이 바뀌면 교회는 반드시 영향을 받는다. 기독교의 리더십은 이런 큰 흐름의 변화를 읽어내고 대처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교회 공동체는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한편으로 사람의 정신적 인식의 구조 변화와 다른 한편으로 구체적인 조직이나 기술 발전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런 점과 관련하여 깊이 살피고 질문하며 해답을 찾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세계는 이런 각도에서 볼 때 무엇이 변하고 있는가?

인터넷 환경이 광범위하게 인간 삶의 정신과 기술을 재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교회 공동체 구조에 단기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한 세대나 두 세대 뒤에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세대에 대하여 한국 교회는 어떤 예측과 준비를 하고 있는가?

오늘날의 세계 전체에 대하여 교회는 어떤 시각과 판단 그리고 어떤 성경적 전망을 갖고 있는가? 

교회 내 분쟁의 사회법 절차에 따른 해결에 대한 검토

이 상 민 변호사 | 법무법인 소명, 기독교법률가회(CLF) 사회위원장

1. 머리말

교회 내 분쟁이 일반법원에서의 소송으로 비화되거나 형사 고소,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교회 분열시 교회 재산의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 일반법원에서 다루어진 지는 이미 오래되었지만, 최근에는 감독회장, 교단 총무 등 교단 임원을 뽑는 선거를 둘러싼 소송이 심심치 않게 일반법원에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교회 분쟁 과정에서 일단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 고소, 고발을 하고 보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교회 내 분쟁을 교회법에 따라 교회나 교단 내에서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바로 사회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먼저 교회 내 분쟁이 일반법원이나 검찰, 경찰로 갈 경우 법원 등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는지에 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교회 내 분쟁이 사회법 절차로 직행하는 현상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2. 교회 내 분쟁에 대한 법원 등의 개입의 범위

가. 종교 교리의 해석에 관한 분쟁

법원은 종교 교리의 해석이 문제될 경우에는 적극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입장을 보였다.¹⁾

1970년대 말에 어떤 개인이 통일교가 기독교의 종교단체가 아님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통일교가 기독교의 종교단체인 여부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으나 통일교가 종교단체인 여부는 원고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문제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즉시 확정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²⁾. 확인청구소송에 의한 확인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분쟁이 ‘권리·법률관계’이어야 하며, 사실관계는 확인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대법원은 통일교가 종교단체인지 여부는 사실문제이므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종교 교리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어떤 사찰이 대한불교조계종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관해서도 ‘이 청구는 이 사찰에 속하는 구체적인 재산의 소유권 등에 관한 존부의 확인도 아니며 원·피고 간의 이 사찰의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문제일 뿐 구체적인 권리 내지 법률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³⁾.

그리고, 다음에 검토할 권징재판에 관한 판례에서 대법원은 종교 교리의 해석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밝혔다⁴⁾.

나. 권징재판

교회 구성원에 대한 내부 징계(권징재판)에 관하여 징계대상자가 승복하지 않아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는 경우⁵⁾, 법원은 교회의 권징재판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권징은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정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며 본건에서의 무효를 구하는 결의(재판) 역시 직접으로 원고들에게 법률상의 권리침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이런 결의(재판)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위 법률상의 쟁송사항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⁶⁾. 대법원이 권징재판이 사법심

1) 이 점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는 이영진 사법권과 종교단체의 내부분쟁·부분사회론의 소개와 종교단체내부의 사법심사에 관한 각국 판례의 비교, 사법논집 33집, 245-247면 참조

2)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124 판결.

3) 대법원 1984. 7. 10. 선고 83다325 판결.

4)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58 판결. 이 판결은 종교 단체의 징계결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원이 그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않는 한 법원이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5) ‘총회재판국결의 부존재 확인청구소송’ 등의 형태로 제기될 것이다.

6)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다1118 판결.

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포함되는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려는 취지로 보인다⁷⁾.

다만, 대법원은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권징재판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교회의 권징재판은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 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제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권징재판으로 말미암은 목사,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는 직접적으로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그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⁸⁾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의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⁹⁾.

그렇지만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면직·출교처분이 교회헌법에 정한 적법한 재판기관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회 헌법규정에 따라 다룰 수 없는 이른바 확정된 권징재판을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면직·출교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면직·출교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다¹⁰⁾. 권징재판이 예외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해야만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다. 교단의 변경, 교회의 분열

판례는 교단의 변경과 교회의 분열에 관해서는 권징재판과는 달리 많은 사법적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는 교회분열 등으로 인하여 재산권에 관한 귀속문제가 필연적으로 야기되기 때문일 것이다¹¹⁾.

개 교회의 법적 성격은 이른바 '법인 아닌 사단'이다. 대법원 판례는 오랫동안 각종 법인 아닌 사단 중 오직 교회에 대해서만 법인 아닌 사단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법리와는 달리 교회의 분열을 허용하고 분열시의 재산관계는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라고 판시했다¹²⁾. 또

7)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다카2065 판결 참조

8) 소송 당사자인 교회의 대표자의 대표권을 부인하면서 그 전제로 권징재판의 무효를 다투고 있는 경우가 이러한 경우가 될 것이다.

9) 대법원 2007. 6. 29. 자 2007마224 결정

10)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58 판결

11) 이영진 위 논문 250면

한 교회의 소속 교단 변경은 교인 전원의 의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¹³⁾. 대법원의 종전 태도는 법원의 분쟁해결기능을 상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종전 교회를 박차고 나온 사람들에게 재산적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교단 상호간 및 교인 상호간의 분쟁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같은 비판을 수용하여 대법원은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다. 즉, 대법원은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제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고,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고 판시하였다¹⁴⁾.

라. 교단임원선거 등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한 분쟁에서 보듯이 교단임원선거와 관련해서 직무정지가처분, 선거무효확인청구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그러한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장로의 불신임을 결의한 공동의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대법원은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¹⁵⁾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공동의회결의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였다¹⁶⁾.

마. 형사 고소, 고발

12) 대법원 1993. 1. 19. 선고 91다1226 전원합의체 판결.

13)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716 판결.

14)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15) 이 사건에서는 장로의 불신임을 결의한 공동의회결의를 말한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방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위와 같은 공동의회결의의 무효는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16)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교회 내 분쟁과 관련하여 형사 고소, 고발이 접수되면 검찰과 경찰은 일반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 소결론

따라서 교리 해석과 권징재판을 제외하고는 교회 내 분쟁에 대해서도 법원 등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교회 내 분쟁의 법원 등을 통한 해결의 타당성

교회 내 분쟁에 관하여 법원 등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현실과 교회 내 분쟁을 법원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가. 성경의 태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절 내지 7절에서 교회 내 분쟁을 일반 법정에서 해결하는 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바울은 심지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까지 말한다. 바울이 위 구절을 통해 일반 사회법정에서의 소송을 절대적으로 금지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바울이 교회 내 분쟁을 곧바로 일반법정으로 가져가는 태도를 경계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¹⁷⁾. 예수께서도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듣거든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말씀하셨다¹⁸⁾.

따라서 성경이 교회 내 분쟁을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않고 곧바로 일반 법정에 가져가서 해결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게 본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¹⁹⁾.

17) 한철, 교회분쟁의 법률문제, 기독교문화연구 13집, 131면.

18) 마태복음 18장 15절 내지 17절.

19) 백현기, 교회의 분쟁에 관한 민사법적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6면.

나. 교회 내 분쟁의 특성

교회 내 분쟁은 관련자들의 신앙적 확신과 관련되기 때문에 다른 분쟁보다 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²⁰⁾. 일반적인 금전적 분쟁의 경우에도 그 다툼이 단체의 주도권 싸움 등 다른 요인과 관련되면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지는데, 교회 내 분쟁은 관련자들이 신앙적 확신에 입각하여 문제에 접근하고 상대방을 대함으로써 해결이 더 어려워지기도 한다. 더욱이 교회 내 분쟁은 교회 등 단체 내의 정치적 다툼의 성격마저 지니기도 한다. 이런 요인으로 인해 교회 내 분쟁은 다른 분쟁에 비해 더 복잡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이 점에서도 교회 내 분쟁을 일반 법정으로 곧바로 가져가는 것을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교회 내 분쟁의 교회 내 해결을 위한 선결 과제

가. 교회 내 해결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이 선행되어야 함

교회 내 분쟁은 교회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교회 내 분쟁을 교회 내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내에 이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서 올바르게 작동해야만 한다. 교회 내 해결시스템이 미비하고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데도 일반법정으로 가는 것을 자제하라고 한다면 이는 실효성도 없고 타당하지도 않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교단에서 교회 내 분쟁에 관하여 사회법정에 제소하는 행위를 권징 대상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같은 규정의 유효성이 문제될 수 있다. 법원이 권징재판에 대한 사법적 심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만일 위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사람이 사회법정에 그 징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더라도 그 같은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또한 일부 교단에서는 선거조례와 관련하여 교단 헌법 등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회법정에 제소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총회 임원 등을 맡을 수 없도록 정하기도 하는데²¹⁾, 이 규정의 유효성도 문제될 수 있다. 만일 이 규정에 의하여 총회 임원직을 제한 받은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 사건은 권징재판의 당부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사법심

20) 한철 위 논문 115-116면.

21)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선거규정 제26조 제7호

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사회법정에 대한 제소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 헌법 등에 의한 절차를 먼저 거치라는 것일 뿐이므로 그 규정의 유효성이 부인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나. 개 교회 정관 작성의 중요성

교회 내 분쟁 해결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로 각 개 교회별로 정관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개 교회는 그 법적 성격이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는데, 비법인 사단에서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정관이다. 정관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각 개 교회 정관에 의사결정구조, 분쟁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상세하고 합리적으로 규정한다면 분쟁의 소지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면 일반법정에 호소할 여지도 당연히 줄어들 것이다.

각 개 교회의 정관은 교회 내 분쟁이 어쩔 수 없이 일반 법정으로 가게 된 경우에는 그 분쟁을 해결하는 일차적인 규범의 역할도 하게 된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관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기준으로 하여 교회 내 분쟁을 보다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이 법원의 판단에 승복할 여지도 많게 된다. 따라서 교회 내 분쟁 해결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각 개 교회가 정관을 제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다. 권징조례의 정비

둘째로 각 교단의 권징조례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권징조례는 권징의 대상, 권징재판의 절차, 재판국의 구성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교회 내 분쟁을 교회 및 교단 내에서 해결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규범이다. 그런데 권징조례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권징조례는 범죄(제3조)에 대하여 “교인, 직원, 치리회를 불문하고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혹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이 역시 범죄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권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대하여 매우 애매모호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²²⁾.

22) 예장합동측 권징조례에 관해서는 목사면직에 대해서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유장춘 교회사건에 대한 국가법령 적용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26-231면
참고로, 2007년 5월 전면 개정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헌법 권징편은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를 다음과 같이 11가지로 상세하게 구분하고 비교적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

어떠한 죄과가 권징의 대상이 되는지를 권징조례에 명확하게 정해 두어야만 권징에 대한 진정한 승복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권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권징조례의 내용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라. 재판국 심판사건의 확대

교회 내 분쟁을 교회 내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교단 재판국이 권징사건 이외의 사건도 적극적으로 심판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교단의 권징조례는 권징사건만 재판국의 심판대상으로 삼거나 권징사건 이외의 사건을 재판국의 심판대상으로 삼을 경우에도 소극적으로만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²³⁾. 권징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현재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분쟁을 적극적으로 재판국의 심판대상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다. 교회 내 분쟁을 최대한 각 교단 재판국으로 가져가서 해결하려는 제도적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마. 재판국원 구성의 다양화

아울러 각 교단 재판국의 구성원을 다양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적어도 일반법원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총회 재판국의 구성원이라도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교단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을 예로 들면, 총회 재판국의 구성에 관하여 예장합동측의 경우 '총회는 상설재판국을 두고 목사 8인, 장로 7인을 국원으로 선정하되 한 노회에 속한 자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권징조례 제134조), 예장통합측의 경우 '총회 재판국은 총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15인(목사 8인, 장로 7인)으로 구성한

1.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2. 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이하 헌법 또는 규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3. 예배를 방해한 행위
4.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5.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6.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7.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
8.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9.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10. 치리회 석상에서 폭언 폭행 기물파괴 행위
11. 사건 담당직원(재판국원, 기소위원)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23) 예컨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권징조례는 교인이나 직원에 대하여 범죄사건으로 소송하면 이런 사건은 재판건이라고 하고 기타는 행정건이라고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제5조), 행정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헌법 권징편은 재판국의 심판대상으로 권징사건 이외에 행정쟁송도 들면서 행정쟁송에 행정소송, 결의취소 등의 소송, 치리회 간의 소송,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을 포함시키고 있다(제148조). 행정쟁송은 교회 내부의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쟁송이라고 한다(오시영, 민사소송절차와 교회 내부 징계절차 및 행정쟁송절차의 비교 검토, 민사소송 제12권 제1호, 471면).

다. 다만, 재판국원은 동일한 노회 파송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된다(권징조례 제10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장합동측 교단과 예장통합측 교단이 동일하게 총회 재판국원은 목사 8인, 장로 7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총회 재판국원을 총회에서 선임된 목사와 장로만으로 구성할 경우 총회의 재판이 교단 정치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 따라서 총회 재판국원의 자격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총회 재판국이 최종심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교회 내 분쟁에 관한 교회 내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수긍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총회 재판국원에 법률 전문가를 상당수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장통합측 권징조례는 재판국원 15인 가운데 2인 이상은 법학을 전공한 법학사 학위를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하지만(권징조례 제10조 제2항),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총회 재판국원 중 적어도 1/3은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 전문직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²⁴⁾.

나아가 교단 정치가 교회 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예 교단 외부 인사를 총회 재판국원으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교단 외부 인사들이므로 교단 내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엄정한 판단을 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교회 내 분쟁해결시스템이 전문성을 구비하고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판국의 구성원을 다양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바. 교회 내 재판의 엄정한 판단과 신속한 처리

관련 제도를 정비할 뿐만 아니라 각 교단이 실제로 권징재판 등 교회 내 재판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재판이나 봐 주기 식의 재판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단 재판이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요망된다.

또한 교회 내 재판의 신속한 처리가 있어야 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라는 법언이 있다. 교회 내 재판이 실효를 거두려면 권징 등에 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것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권징 등에 관한 결정을 미루는 것은 관

24) 총회 재판국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법률 전문직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을 것이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국회, 정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4.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 정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10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5.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련자를 봐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5. 사회법정으로 갈 경우의 유의점

앞에서 본 것처럼 교회 내 분쟁을 곧바로 일반법정으로 가져가거나 형사 고소, 고발 등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최대한 교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지만 현재 교회 내 분쟁해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고, 단시간 내에 위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교회 내 분쟁해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법정 등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본다. 특히 교단 정치 등으로 인해 교회 내 분쟁의 교회 내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회법 절차에 호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회법 절차로 갈 경우에도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가.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우선적 활용

첫째, 일반법정으로 가더라도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화해, 조정, 중재 등 이른바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²⁵⁾. 교회 내 분쟁을 화해, 중재 등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 설립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소송 절차에서도 화해, 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소송 절차로 가기 이전에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등을 통한 화해, 조정, 중재 등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송 절차는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교회 내 분쟁으로 인한 소송 제기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교회의 권위가 더욱 추락할 수 있다. 또한 일단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승소하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서로간의 감정이 악화됨으로써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대안적 분쟁해결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나. 형사 고소, 고발의 자제

둘째, 교회법으로 해결하지 못해 사회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더라도 형사 고소, 고발은 가급적 최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사소송은 주로 금전적 해결을 목표로 하지

25) 한철 위 논문 132면

만 형사 고소, 고발은 상대방에 대한 처벌이나 인신구속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단 형사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면 관련자들의 감정이 민사소송보다 훨씬 격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한국 교회에서 교회 내 분쟁이 발생하면 일단 상대방에 대한 고소, 고발장부터 접수하고 보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게 되었다. 교회 내 분쟁이 좀 더 추악한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일반 사회분쟁에서는 민사소송의 증거를 확보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쉽게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고소, 고발을 하는 경우도 많다. 형사 고소, 고발의 감정적 영향을 감안할 때 교회 내 분쟁에서는 우선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한 고소, 고발이라도 자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최근 한국 교회에서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목회자의 성범죄는 교회 내 분쟁이라기보다 심각한 형사범죄이므로 형사 고소, 고발에 의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에 준하는 중대한 형사범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 법원 판단의 존중

셋째, 일단 일반법정에 호소하여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면 원고측이든지 피고측이든지 그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 하급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를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전혀 항소, 상고의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정 싸움으로 상소하는 경우도 없지 않은 것 같다. 이와 같은 상소는 자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사회법에 의한 최종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도 교회에서는 교회법이 우선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사회법에 의한 판단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²⁶⁾. 이런 경우에는 분쟁이 끝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사회법에 의한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이를 받아들이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하다.

라. 사회법정의 한계에 대한 인식


넷째, 사회법정에서 항상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증거가 없어서일 수도 있고, 당사자나 변호사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판사가 잘못 판단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이든지, 민사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법정에서 언제나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일반법정은 만능 해결기구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사회법으로 가더라도 일반법정의 이와 같은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면 사회법에 의한 최종 판단에 승복하기가 쉬울 것이다.

26) 대표적으로 감리교 사태

마. 교회 공금으로 재판 비용을 사용할 경우의 문제점

다섯째, 목회자가 개인의 비리나 부정과 관련된 민, 형사절차에서 교회공금으로 변호사 보수나 재판 비용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배임죄로 처벌된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횡령행위, 재산문제, 감독회장 부정선거, 여자문제 등 피고인의 개인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교회공금을 사용하는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목사가 교회 내부의 규정에 따라 장로들로 구성된 기획위원회, 실행위원회 등의 결의를 거쳐 위와 같이 교회 공금을 사용한 경우, 기획위원, 실행위원 등이 목사의 개인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교회공금을 사용하기로 한 결의에 찬성한 행위도 교인들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²⁷⁾. 따라서 목회자가 개인 비리 등과 관련된 사건의 변호사 보수 및 소송 비용으로 교회 공금을 사용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당회가 이를 승인해서도 안될 것이다.

6. 맺음말

법원은 교리 해석 및 권징재판을 제외하고는 교회 내 분쟁에 대해 개입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 내 분쟁을 곧바로 사회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회 내 분쟁의 교회 내 해결을 위해서는 교회 내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 교회 내에서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와 같은 해결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교회 내 해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법정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먼저 화해, 조정 등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형사 고소, 고발 등은 최후 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27)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756 판결

한국교회 정치회복을 위한 원리와 제도¹⁾

배종석 교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기독교경영연구원 원장

I. 서론

한국교회는 전체적으로 성도의 수가 줄거나 혹은 내용상의 질적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고, 외부적으로는 신뢰의 상실과 교회다움의 상실로 인해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치유해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 교회가 정체성을 상실하고 나니 주체성이 약화되고 염려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이런 현상은 교회정치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한국교회의 정치문제의 본질은 다양하게 접근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제에서는 내부적 측면과 외부적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하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직분의 계서화와 지배적 리더십'에서 찾을 수 있고, 외부적으로는 '권력화된 이기적 기독교'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교회 내부적으로 보면, 교회정치에 참여하는 교계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섬겨야 하는데, 직분의 계서화와 권력화로 인해 균립하는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 큰 이슈이다. 교회 외부적으로는 세상을 향하여는 섬김과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이 걱정을 하는 상태까지 이르렀는데, 결국 승리주의와 교권주의로 인해 세상의 치유와 회복 및 섬김보다는 권력과 교권에 관심을 기울이는 권력화된 이기적 기독교로 변질된 부분이 문제의 본질이다.

경영학자가 정치문제를 다루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다. 조금 정당화를 하고 지나가자면, 교회정치는 세상의 정치와는 다른 측면이 있어서 경영학자가 다룰 영역이 있을 수 있다. 가령, 세상의 정치는 권력의지가 중요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없는 경우는 정치가의 자격이

1) 본 발제문은 발제자가 기고한 배종석(2013), "교회본질을 살려 내는 교회 직제의 바른 설계" (정주채 외 [한국 교회와 직분자: 직분제도와 역할(IVP)] (pp.75-132)에 기반한 것임을 밝혀둔다.

부족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회정치는 그 목적과 방향이 다르게 정리될 수 있다. 그 다름은 인간이해, 교회이해, 그리고 교회의 제도이해 등에서 드러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경영학자가 기여할 공간이 생성된다고 볼 수 있겠다. 사실 교회정치, 교회행정, 교회경영이라는 용어는 그 외연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각각 다루는 영역이 매우 상이할 수 있는데, 이들 분야들이 각각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면서도 상당히 겹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의 문제, 제도화를 통한 정치제도의 구축 문제, 건강한 문화의 형성 등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다. 특히 조직의 문제는 정치와 밀접한 연계성이 있다. 예를 들면 조직의 모습과 성격은 어떤 조직화 원리(organizing principle)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상이해진다.²⁾ 흔히 교회정치 형태로 구분되는 회중제, 장로제, 감독제의 경우도 조직이론 관점에서 보면 조직화의 원리가 상이한 것이며, 이에 따라 분업화, 공식화와 표준화, 분서화와 계층화, 그리고 집권화 등의 조직설계변수들이 달라진다.³⁾ 이런 조직체의 성격은 결국 정치형태와 정치참여자의 권한과 역할 등이 달라지게 만든다. 따라서 본 발제는 경영학자로서 교회정치와 관련하여 경영학의 조직론과 겹치는 부분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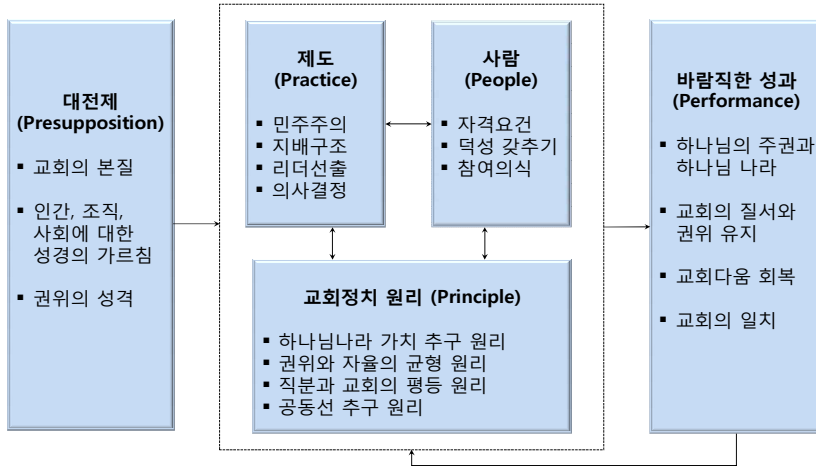
본 발제에서는 교회정치와 관련해서 원리적 측면, 제도적 측면, 그리고 주체자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교회정치 분석을 위한 틀로서 5P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그림 1 참조).⁴⁾ 5P는 대전제(presupposition), 교회정치원리(principles), 제도(practices), 주체로서의 사람(people), 그리고 바람직한 성과(performance)이다. 이들 5P는 교회정치의 문제점 도출, 본질의 파악, 그리고 개선점 제안 등의 여러 측면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가령 교회정치의 문제를 분석할 때, 5P를 잘 들여다보면 문제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2) Heckscher, C. C. and Adler, P. S. (eds). (2006). The firm as a collaborative community: Reconstructing trust in the knowledge econom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3) 배중석. 2013. 교회본질을 살려 내는 교회 직제의 바른 설계. 정주채 외 한국 교회와 직분자: 직분제도와 역할(pp.75-132). IVP.

4) 배중석(2013)의 논문, "인적 '가치창출'과 '인간가치' 창출: 경영의 철학적 기반"(경영학연구, 42(2): 573-609)의 <그림1>을 응용한 것임.

<그림 1> 교회정치 분석을 위한 5P 모델



II. 교회정치의 기반: 대전제와 성과

1. 대전제 (Presupposition)

교회정치가 건강하게 성립되려면 반드시 대전제가 필요하다. 일반정치와 다른 세상의 기관(institution)과는 구분된 독특한 전제가 요구된다. 여기에 포함될 주제는 많겠으나 본 발제에서는 기본요소로 교회의 본질, 인간/조직/사회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 그리고 권위의 성격 등에 대한 것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첫째로 교회의 본질과 관련해서는 교회론 전체를 다루기 보다는 교회정치와 연계성이 있는 주제로 한정하려고 한다. 이 때 가장 고려해야 하는 것은 교회의 단일성, 다양성 및 통일성에 대한 주제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로 인해 성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으로 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그의 몸이 되었으며, 성령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전이 되었다. 따라서 구원과 교회의 출발이 한 하나님이다. 여기에 교회의 단일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교회는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한 모습대로 동등하게 존재한다. 교회의 위치나 규모에 상관없이 하나의 단일한 교회로 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치리회나 다른 교회가 단위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교회는 통일성을 가지고 다시 보편적 교회로 나아간다.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의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로, 인간, 조직 및 사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관련해서 설명하려고 한다. 여기서는 우선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할 수 있다. 인간이해에서 한 가지는 기독교 세계관 틀로 제시되는 창조-타락-구속의 관점에서 보는 타락성과 회복성의 공존문제이다. 다른 한 가지는 개체성과 관계성의 조화문제이다. 이런 인간이해에 기반하여 조직화되고, 또한 이런 맥락에서 사회가 구성되고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앞의 인간이해의 두 가지 관점의 프로파일에 따라서 조직과 사회의 모습이 달라지고, 정치형태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공존과 조화의 관점에서 보면 낙관적 관점에 입각한 자율적이고 개체적인 인간의 사회를 상정하지 않는다. 역으로 비관적으로 보고 통제와 관리의 관점에서 조직과 사회를 이해하지 않는다. 이 공존과 조화의 관점은 타락의 영향은 리더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 적용되며, 가능성과 회복의 방향을 인정하므로 자율적 참여와 회중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도화한다. 그러나 이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직분자의 권위를 인정한다.

세째로, 권위의 성격에 대한 이해방식도 중요한 전제적 요소이다. 위에서 설명한 인간, 조직 및 사회의 이해는 권위의 성격이해에도 관련된다. 제5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의 의도 혹은 목적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작성에 관여한 우르시누스는 “하나님께서 하급자들과 상급자들 간의 상호 의무들로 지정하신 시민의 질서를 보존하는 데 있다. 상급자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일을 위하여 그들 위에 세우신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⁵⁾

권위에 대해 최근 경향인 ‘포스트모더니티의 문화’로 나타난 결과 중 하나는 권위의 불인정이다. 다른 극단은 권위를 가진 자의 권위주의이다. 성경은 권위를 인정하지만, 또한 권위를 가진 직분자의 자세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제시하고 있다. 즉 다스림을 받는 자들을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야 함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성과 (Performance)

교회정치의 본질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지향하는 성과에 대해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달라지면 앞 단의 내용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성과에 대한 논의는 교회정치가 아니라 다른 주제들, 예를 들면 교회직제, 리더십, 건강한 교회 등으로 대체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서는 네 가지 성과내용을 제시하려고 한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나라이다. 우리의 왕국이나 우리의 교단이나 우리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나라가 초점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복종과 충성이 있을 뿐이다. 대단히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교회정

5)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원광연 옮김) (2006),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크리스찬다이제스트)], p.900.

치를 하는 이면에 내 권력의지와 내가 다스리는 소왕국을 가지고자 하는 열정을 버리지 못한다면 본질을 상실하는 것이 된다.

두번째는 교회의 질서와 권위 유지가 그 열매가 되어야 한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전 14:40)는 말씀을 따라 “적합하고 질서 있는 방식으로”(NIV, “in a fitting and orderly way”)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이다. 품위 있다는 것 즉 적합하게(fitting way) 한다는 것은 대전제와 원리에 따라 제도화하고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과 연계된다.

세번째는 교회다움의 회복이다. 교회가 치리회를 두는 것은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을 멀리하고 그의 뜻에 맞는 것을 강화하여 교회의 본질을 잘 드러내주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교회다움을 상실하는 방향의 교회정치는 이성이 도구화되고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어리석은 행위들이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일치도 중요한 성가지표도 들어와야 한다. 한국교회는 특히 본질과 관련 없는 데도 인간적인 방식에 따라 교단이 형성된 경우들이 있었기에, 교회 일치라는 목적은 잘 성취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뉴하우스(Richard Neuhaus) 목사는 <종교와 민주주의 연구소 (Institute on Religion and Democracy)>를 창립하면서 그 취지문에서 교회가 좀 더 개방성을 가져야 함을 역설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다양한 민주주의적 가치들(예, 자유, 정의, 평화)을 추구하는 방식에 생각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교회는 서로 용납하고 인정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하여 분리보다는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⁶⁾

Ⅲ. 교회정치의 실제: 원리, 제도 및 사람

1. 정치원리 (Principles)

정치원리는 제도와 사람들의 활동에 기반이 되는 가치가 될 것이다. 이것이 기반이 되어 제도의 구축과 실행, 사람들의 의사결정과 행위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네 가지 정치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중 첫번째 원리로 제시하는 하나님나라의 가치 추구 원리는 내용상의 원리이다. 즉, 하나님나라의 가치가 내용적으로 잘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교회정치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세 가지 원리들은 건강한 교회정치의 형성을 위한 절차적, 형식적 측면이 더 부각된 것들이다. 이런 절차적 원리들이 있으

6) <종교와 민주주의 연구소 (Institute on Religion and Democracy)>의 창립문서(founding document)인 Richard John Neuhaus 목사의 Christianity and Democracy (www.ird-renew.org).

로 인해 바른 방향으로 나가갈 수 있도록 촉진시킨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추구 원리이다. 하나님나라 가치는 다양하게 나열될 수 있겠지만 기윤실의 핵심가치도 하나님나라의 가치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정직(honesty & integrity), 책임(accountability & responsibility), 정의(justice & fairness), 평화(peace & communication), 배려(care & hospitality) 등이다. 이것은 또한 기독교경영연구원이 기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성경에서 도출한 기독교경영의 5대 핵심원리와 매우 비슷하다. 기경원의 핵심가치는 영어의 첫 글자를 사용하여 'JusT ABC'로 불리고 있다. 그것은 창조(creation), 책임(accountability), 배려(benevolence), 정의(justice), 신뢰(trust) 등이다. 하나님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서 가장 잘 드러내야 하는 교회에서는 위에서 열거한 하나님나라의 가치들이 더 충만하게 발현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둘째는 권위와 자율의 균형 원리이다. 이것은 권위가 없는 자율만의 상태나 역으로 권위만 존재하는 상태를 부정하고 두 개가 공존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도 언제 권위가 발휘되어야 하고, 언제 자율이 보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와 지침이 필요하다.

장로교 정치제도의 대전제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어떤 직분자도 성도나 다른 직분자 위에서 지배할 수 없으며, 모두 하나님의 종으로 서야 한다. 바울이 상전들에게 준 권면도 하늘에 상전이 계시니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 것을 주문하고 있다(골4:1).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경우 존 낙스의 교회치리서(The Book of Discipline)에서는 평신도인 장로들로 하여금 목사의 독주와 횡포를 막기 위해 목사를 감독하게 함과 동시에, 장로들의 교권행사를 극소화하기 위해 임기를 1년으로 하여 균형을 가지게 하였다.⁷⁾ 이와 함께 장로는 권위의 정당성을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을 통해 하나님의 인정과 회중들의 인정을 동시에 받아서 확보해야 한다.⁸⁾ 이렇게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면 영적 권위를 가지게 되고 그 권위를 발휘하여 치리하도록 허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남용하여 교인들을 지배하도록 허락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영적 권위의 발휘와 지배할 수 없는 것 사이의 균형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균형은 정치철학에서 논의되는 비지배 자유라는 개념으로 잘 설명이 된다.⁹⁾

비지배 자유란 타인의 자의적 의지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¹⁰⁾ 이 개념은 이사야 벌린(Isaiah Berlin)의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구분과는 또 다른 개념이다. 벌린은 소극적

7) 이장로, 임성빈, 정병준, 주승중, 최윤배, 2008.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의 길 (Ⅳ): 장로의 책임과 역할. 성안당. pp. 196-197.

8) 칼빈은 직분으로의 부르심에 대해 이중적 소명(twofold calling)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받는 내적 소명(internal calling)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의 공적인 질서와 관계되는 공식적인 외적 소명(external calling)이다 (John Calvin,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Book IV, Chapter 3, No.11, p.754; www.ccel.org).

9) 물론 성경과 신학에서의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다룬다. 자유의 개념은 신학, 철학, 정치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여러 측면에서 개념화하고 사용되는 개념이므로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은 연구자의 역량과 본 원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10) 비지배 자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곽준혁, 2010. 경계와 편견을 넘어서 우리시대 정치철학자들과의 대화. 한길사. pp. 40-47; Pettit, P. 1997. Republicanism: A theory of freedom and govern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h.2. 등을 참조

자유(negative liberty)를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선택행위(action)를 행할 수 있는 간섭의 부재로 정의한 반면, 적극적 자유(positive liberty)는 자율(self-rule)을 핵심으로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됨을 구성요소로 하는 자유를 말한다.¹¹⁾ 전자는 자유주의에서, 후자는 공동체주의에서 견지한 자유의 형태이다. 반면, 비지배 자유는 비지배조건(nondomination condition)을 자유의 핵심으로 하는 지배의 부재를 의미한다. 고전적 공화주의에서는 간섭의 부재를 의미하는 소극적 자유의 확보보다도 지배의 부재를 의미하는 비지배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¹²⁾ 예를 들면, 별로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는 관대한 주인을 모시는 노예의 경우, 간섭의 부재라는 측면에서 소극적 자유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 자유를 빼앗고 지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타인의 지배로부터의 자유는 없게 되므로 비지배 자유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예에서 ‘간섭 없음’보다는 ‘지배 없음’이 더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비지배 자유에 따르면, (정치) 리더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렇게 선출된 리더는 백성들에게 간섭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 받게 된다. 국민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간섭하여 제재를 가한다. 정책을 펼치고 보다 나은 국가를 세우기 위해 부여된 권위를 활용한다. 그런데 그 간섭이 지배로 바뀌거나 지속되지 아니해야 하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면 국민들로 하여금 견제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리더가 있어서 간섭하며 통치하지만, 지배적 위치에 있지는 않게 된다.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에 의하면, 간섭의 부재나 약화를 주창하기 때문에 정부의 권위자체를 기능하면 축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전체주의적인 접근에서는 권위의 발현과 전체성의 증시로 개인성이 무시되거나 지배적 상태가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바로 이런 논리 때문에 고전적 공화주의의 비지배 자유 개념은 장로교 정치원리에서 주장하는 하나님의 주권사상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되심의 교리와 잘 상통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장로교 직분자의 영적 권위도 내적 소명으로 시작되지만, 외적 소명을 통해 공적인 확인과 검증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회중들로 하여금 현재의 권위가 지속적으로 발휘해도 되는지에 대한 신임을 묻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한 이러한 원리에 기반하게 되면 장로의 선출방법, 임기, 재신임, 권위, 역할, 태도 등이 보다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직분자, 특히 장로의 영적 권위를 발휘하는 것 자체가 축소되거나 약화되어서는 곤란하다. 서로서로 간섭하지 않고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균형이 아니다.

11) Berlin, I. 1969[2002]. Liberty (Edited by H. Hard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169-187.

12) 장로교 정치체제와 공화정치 제도의 연계성을 언급한 문헌도 있다. 예를 들면 배광식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과 그의 행정관료들은 장로교 정치체제인 공화정치 제도를 미국 행정부의 원리로 채택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배광식의 앞의 책, p.145). 결국 미국 장로교회의 경우는 정치제도와 상호 영향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칼빈적 교회 유형은 프랑스 개신교에서 위그노들에 의해 정치 영역으로 이전하게 되었으며, 위그노들은 군주정 안에 자리한 공화국이었다 (요아킴 스타트케 (정미현 역), 2009. 장로교의 뿌리 칼빈. 만우와장공. pp. 147-155).

그것은 오히려 직분자로서의 부르심에 책임 있게 응하는 자세가 아닐 것이다. 이제 이 원리에 충실한 제도는 어떤 모습일지를 더 구체화 하여 구현해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될 것이다.

셋째는 직분과 교회의 평등 원리이다. 직분자가 가진 사역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직분자가 계서화 되어서는 곤란하다. 개별교회도 규모에 상관없이 평등한 교회로서의 권위를 가지게 된다. 성도의 수나 예산의 규모에 상관없는 권위를 가진다는 것이다.

직분이 평등하다는 것은 각 개별 직분간에 계급처럼 우열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교회 내에서 성직자-평신도 구분은 교회 역사 속에서 지속되어 내려오는 관행이지만, 이러한 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차별적 지위에 기반한 구분이거나 '두 백성'을 전제로 하는 접근이 되어서는 곤란하다.¹³⁾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대로 만인제사장(priesthood of all believers) 접근에 의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든 백성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2:9)

우리 모두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은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¹⁴⁾ 첫째는 하나님께로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더 이상 어떤 직분이 개입하여 중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다. 둘째는 서로 서로에게는 은사를 따라 함께 동역하며 서로에게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교회건설은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상호 동역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¹⁵⁾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모두가 세상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곧 직분무시적 관점을 취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만인이 목회자나 장로라는 뜻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의 만인제사장적 가르침¹⁶⁾이 중요하며, 이것은 직분에 대한 교훈¹⁷⁾과 함께 균형을 가지고 함께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사상적 기반 위에서 모든 직분도 평등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직분간의 평등과 함께 직분내의 평등도 의미한다.¹⁸⁾ 교회의 어떤 직분도 다른 직분에 종속되거나 상위에 존

13) 폴 스티븐스 (Paul Stevens) (홍병룡 역). 2001.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IVP. pp. 10-15.

14) 하워드 스나이더 (권영석 역). 2005. 참으로 해방된 교회. IVP. pp. 243-245.

15) 황대우, 2010. 칼빈과 개혁주의 갈등 pp. 276-279.

16) 롬 12:1; 벧전 2:5, 9; 계 1:6; 5:10; 20:6 참조

17) 행 14:23; 20:17, 28; 고전 12:28; 엡 4:11; 빌 1:1; 딤후 3:1-13; 5:17; 딤후 1:5-9; 벧전 5:1-5; 요이 1:1; 요삼 1:1 참조

18) Engelhard, D.H. & Hofman, L.J. (심재승, 박동건 옮김). 교회운영교본(Manual of CRC Government) (2001년 수정판). 북미

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 직분 위에 다른 직분이 균립할 수 없다. 이것은 칼빈이 주장한 바와 같이, 각 직분은 고유한 사역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인식과 맥을 같이 한다. 즉, 목사는 설교하는 일, 교수(교사)는 가르치는 일, 장로는 다스리는 일, 그리고 집사는 섬기는 일 등이 고유한 사역의 영역으로 주어졌으므로 한 직분이 다른 직분의 종속적 혹은 부차적 위치를 갖지 않는다.¹⁹⁾ 칼빈이 집사에 대해 중요하게 공헌한 점은 집사가 섬겨야 할 대상에 관한 것이다.²⁰⁾ 즉, 가톨릭교회의 경우처럼 집사가 사제를 위해 봉사하거나, 한국장로교에서 흔히 인식되는 장로나 목사를 돕는 보조역할을 위한 부수적인 직분이 아니라, 집사의 섬김의 대상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집사도 고유한 기능을 가진 (즉, 다른 직분의 기능을 돕기만 하는 것이 아닌) 독립된 (즉, 종속되지 않은) 직분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흔히 목사-장로-안수집사-서리집사 등과 같이 교회직분을 계층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는 한국 교회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칼빈의 가르침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직분 내에서도 동일하게 평등이 유지되어야 한다. 프랑스 위그노 개혁교회 제1차 총회에서 채택된 교회치리법에서도 교회들과 직분자들간의 동등성 정신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떤 교회도 다른 교회보다 높지 않고 다른 교회 위에 균립할 수 없다. 한 교회의 목사들 상호간에, 장로들 혹은 집사들 상호간에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²¹⁾ 특정 목사(예, 담임목사)가 다른 목사 위에서 직분상 우월을 나타낼 수 없으며, 장로(예, 수석장로)가 다른 장로에게 우월성을 나타낼 수 없다. 유교적 전통을 가진 한국교회는 누구 이름이 먼저 언급되는지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 또한 누구의 발언이 더 무게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은연중에 정리가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당회나 교회의 회의에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질서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인본주의로 가는 방편이 되고 있다.

개별 교회내에서의 직분간 혹은 직분내의 수준을 넘어 이 동등의 원리는 교회와 교회 사이, 그리고 치리회와 치리회 사이의 동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동등이 깨어지면 부당한 교권이 개입될 여지가 생겨, 큰 교회가 작은 교회에 균립하고, 노회가 당회 위에 그리고 총회가 노회 위에 균립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²²⁾ 이러한 동등의 원리가 미국의 대의 정치 원리에 의해 변경된다. 미국장로교회에서는 교회의 크기에 따라 노회에 더 많은 총대를 파견하고, 또한 노회의 크기에 따라 총회에 더 많은 총대를 파견하여 힘을 행사하게 되

주개혁장로회한인출판국, pp. 475-476.

19) 이성호, 2009. 바른교회 바르게 세우기: 직분에 대한 칼빈의 견해. 신학정론 27(1): 51-78.

20) 이성호의 앞의 논문.

21) 이장로 외 앞의 책, pp. 192-193.

22) 성희찬, 2009. 교회정차: 권징조례 예비지침. 고려신학대학원 강의안. 이 강의안에 의하면 치리회 사이의 동등 원리에서 연합성의 원리가 나온다. 이 참된 연합 안에서 교단의 의미도 살아날 수 있다. 당회, 노회, 총회라는 치리회(church court)가 상회/하회라는 말을 사용하여 우월적 표현으로 들리지만, 이 말은 치리회의 관할범위가 다르고, 삼심제도와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는데, 연합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주의를 하여 사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어 있다.²³⁾ 한국장로교회도 미국장로교회의 영향을 받아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직분자의 평등에 대한 정신은 CRC의 경우는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데, 교회운영교본 제85조에 잘 나타나 있다.²⁴⁾

85조 (교회와 직분자의 평등): 어떤 교회나 의결기구도 다른 교회나 의결기구 위에 결코 균림할 수 없으며, 어떤 직분자라 하더라도 다른 직분자 위에 균림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어떤 교회도 다른 교회 위에 균림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원리의 실행은 CRC 교단의 경우 교인의 수에 상관없이 노회에 두 명의 대표를 파견하고, 노회의 크기에 상관없이 총회에 네 명의 대표를 파견하는 전통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지막 넷째로 공동선 추구 원리이다. 교회는 자율적인 개체들이 계약적 관계를 맺고 모인 집단이 아니다. 따라서 헌정주의(constitutionalism)에 따라서 이미 정해진 공동선(common good)의 성격이 부여되고,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 정신이 드러나야 한다. 이를 위해 제시된 측면들은 책임성(accountability), 심의과정(deliberation), 그리고 경합성(contestability) 등이다.²⁵⁾

책임성(accountability)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연계된다. 그리고 어떤 행위가 취해질 경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정당성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취한 행동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y)을 지는 것이다. 심의(deliberation)는 의사결정의 과정이 개방적이고 진정성이 있어야 하며, 모든 관련 쟁점들을 고려해야 하며, 현안 이슈에 대해 집단적 판단을 대표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경합성(contestability)은 이미 결론이 난 의사결정에 대해 구성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도전할 수 있는 능력과 기꺼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하고 현실적이어야 하며, 이를 위한 분명한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결국 “퇴진(exit)” 옵션 보다는 “발언(voice)” 옵션을 선택하도록 촉진시킨다. 개별교회에서 최근 발생하는 “가나안” 성도(교회 ‘안나가’는 성도)의 경우는 퇴진 옵션을 선택하고 변화가능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고 스스로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다.²⁶⁾ 이것은 한국교회에서 보다 진중하게 논의하여 발언 전략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두어야 할 필요가 대두된다.

23) 배광식, 2006. 장로교 정치제도 어떻게 형성되었나? 도서출판 토라. pp. 146-151.

24) Engelhard & Hofman의 앞의 책 p. 475.

25) Bottomley, S. (2007), The Constitutional Corporation: Rethinking Corporate Governance, Hampshire, UK & Burlington, VT: Ashgate.

26) 양희승, “프로테스탄트 정신과 한국교회의 미래”, 기독교경영연구원 포럼발표 (2013.5.4).

2. 내적 일관성을 갖춘 제도 (Practices with internal consistency)

여기서는 일관성을 갖춘 정치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헌법과 정관의 구비이다. 이것에 기초한 헌정적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단순히 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선호집합적 민주주의(aggregate democracy)나 정치적 자유주의 관점에서 절차적 메커니즘만 갖춘 공정한 시스템으로서의 민주주의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헌법과 정관에 대전제와 정치원리가 제대로 구체화 되어 있어야 하고, 이것에 따라서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것은 공화주의에서 주장하듯이 비지배 자유가 보장되어 누구도 타인의 자의적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기독교계에서는 ‘교회는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교회는 민주주의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두 가지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²⁷⁾ 전자의 주장은 목회자 중심 혹은 당회 중심의 집권화된 교회운영에 반기를 든다는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입장은 교회 리더가 타락의 영향하에 충분히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직분자, 특히 목회자 중심의 교회운영은 교회공동체 전체를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을 지도하고 교육해야 한다는 의도는 좋지만, 이런 식으로 성직자들에 대한 순종이 일상화되면 나중에 분별력이 생기기도 어렵고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미 순종에 익숙해져 버리는 상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다. 후자의 입장은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하여 혹은 타락의 영향하에 있어서 영적 분별력이 없는데도 민주주의라는 명분으로 그들의 말을 듣게 되면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한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는 것에서도 이런 우려를 엿볼 수 있다. 성도들은 가르쳐야 할 대상이지 그들이 교회를 마음대로 운영하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도덕적 옳음에 대한 결정도 다수결로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타당한 우려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위의 두 주장의 경우 모두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옳은 주장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우선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두 주장에서 공히 사용하지만 그 성격과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의미인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교회 혹은 교단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갈등이 생길 때를 감안한다면 어떤 장치를 가지는 것이 그래도 덜 타락의 길로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해야 한다. 즉 최선을 향한 접근과 최악을 막는 접근 사이에서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이슈이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주의와 조정원칙에 대한 간략한 논의를 하려고 한다.

27) 교단으로 보면 로마가톨릭이나 감독제로 갈수록 덜 민주주의적일 것이고 회중제로 갈수록 보다 민주적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교단 내에서도 목회자의 권위를 더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교회의 민주주의의 필요성과 제도의 개선 및 정관수정 등과 관련된 내용은 백종국의 <바벨론에 사로잡힌 교회> (뉴스앤조이, 2010)를 참조

로날드 사이더(Ronald J. Sider)는 일반 정치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해 “민주주의가 기독교적 정부 형태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존하는 다른 체제보다 민주주의가 성경원리에 더 잘 부합된다는 주장은 가능하다.”라고 평가하였다.²⁸⁾ 이런 평가는 인간 죄성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기반하고 있는데, 사이더는 타락으로 인해 인간이 조그마한 선이라도 행할 능력도 없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면 민주주의는 불가능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타락의 영향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권력분산과 견제는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도 “정의를 향한 인간의 능력은 민주주의를 구현하지만, 불의를 향한 인간의 성향은 민주주의를 필요케 한다.”라고 주장하였다.²⁹⁾ 이것은 민주주의를 성립하게 하는 경계조건(boundary conditions)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권력이 소수의 리더에 집중되면 타락의 영향으로 권력의 남용과 오용으로 잘못될 가능성이 있으니 민주주의가 필요하게 됨을 말하고 있다. 나아가 모두가 타락하여 전혀 선한 것이 없으며 민도가 낮고 능력이 없다면 민주주의 제도를 유지할 수 없겠지만, 정의에 대한 생각과 그것을 이룰 능력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실행 가능해진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해석은 칼빈주의 교리 중 전적 타락과 관련이 있는데, 이 교리는 죄가 우리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로 “근본적 타락, 포괄적 죄악 또는 죄의 만연”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³⁰⁾ 즉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이 전적으로 악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위에서 언급한 사이더와 니버의 주장은 우리의 죄성은 리더와 구성원 모두에게 있는데,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권력의 남용 혹은 오용이 가능해지므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민주주의가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동시에 전적으로 악한 것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민주주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지하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심의 민주주의(審議民主主義; deliberative democracy)는 중립적 절차, 심의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서의 시민적 신뢰, 힘의 불평등을 조정할 원칙 등과 같은 것을 제시하면서 시민들의 심의가 민주주의를 이루는 중요한 방편이 됨을 주장한다.³¹⁾ 심의

28) 로날드 사이더. 2010. 복음주의 정치 스캔들. 홍성사 p. 175.

29) Niebuhr, R. 1972. The children of light and the children of darkness: A vindication of democracy and a critique of its traditional defense. New York: Scribner & Sons (p. xiii)을 로날드 사이더의 앞의 책(p.174)에서 재인용.

30)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 필립 그레이엄 라이콘 (2010). 개혁주의 핵심: 칼빈주의 5대교리. 부흥과 개혁사. p.40.

31) 곽준혁(2010), [경계와 편견을 넘어서: 우리시대 정치철학자들과의 대화(한길사)] (pp. 148-159)에 의하면, 민주주의라는 형태는 단일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몇 가지 주요 모델을 소개하면 선호집합적 민주주의 (aggregative democracy), 심의 민주주의 (deliberative democracy), 쟁투적 민주주의 (agonistic democracy) 등이 있다. 선호집합적 민주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극단적 형태의 자유주의적 입장으로 쉘페터(Joshep Schumpeter)의 주장에 기반한 것이다. 이 모델은 정치를 권력획득을 위해 선거를 통한 시민들의 표를 획득하는 경쟁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투표를 통해 시민들 개인의 선호를 집약하는 절차와 제도이지 공공선이나 일반의지 형성과정이라는 것이 아니다. 선호집합적 민주주의와 심의 민주주의 모델을 비판하면서 보다 진보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쟁투적 민주주의이다. 이 모델은 절차적 중립성과 합리적 이성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의 대안이며, 심의에 본질적이고 도덕적 논의가 포함되기 때문에 갈등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이를 잘 제도화하여 인민주권의 실현을 이루어야 함을 주장한다. 심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간략하게 다룬다.

민주주의도 심의의 과정에 규범적 의미를 부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입장이 있지만, 그 중에서 주목하는 입장은 에이미 것만(Amy Gutmann)과 톰슨(Dennis Thompson)의 호혜성에 기반한 모델이다.³²⁾ 것만의 입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가장 체계적인 자유주의적 심의 민주주의 이론으로 평가되는데, 한가지는 공적 변론에 본질적이고 도덕적인 내용을 포함시킨다는 점이고, 다른 한가지는 갈등해결의 조정원칙(regulative principle)으로 호혜성을 제시한 점이다.³³⁾ 우선 본질적이고 도덕적인 논의를 심의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실제적인 갈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정말 문제가 될 만하며 심각한 내용은 수면 아래로 숨긴 채 심의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방식은 롤스(John Rawls)식의 자유주의적 접근인데, 이 입장에서는 본질적이고 도덕적인 내용들은 공적 영역의 토론에서는 철저히 배제된다. 다른 한편, 전체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는 공동체주의에서는 공공선(common good)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통합성을 다원성보다 더 우선시 한다. 반면, 심의 민주주의에서는 심의를 공공선을 창출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며, 그 과정에서 (1) 개인 또는 집단이 특정의 선호를 가지게 된 경위와 이유가 설명되고, (2)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호가 변경되고 집단적 의사가 형성되며, (3) 형성된 집단적 의사가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절차를 거친다.³⁴⁾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심의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필히 갈등이 생기고 조정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것만과 톰슨은 호혜성(reciprocity)을 조정원칙으로 제시한 것이다. 심의 민주주의에서는 심의를 통한 정당성 확보가 중요한데, 만약 힘의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힘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마음대로 자기권리 확보와 유지에 집중할 것이므로 민주주의라는 명목 하에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심의 과정의 불신을 초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참여의 부재에 이르게 되어 무관심과 비참여로 이어지는 무의미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호혜성이라는 조정원칙은 심의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조정원칙으로서의 호혜성은 이기적(self-interest)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며, 황금률에 따라 상호존중의 정신을 가지고 사회적 협력의 공정한 조건(fair terms)과 도덕적 불일치를 해결해줄 상호수용 가능한 방식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한다.³⁵⁾ 이 조정원칙은 비록 다른 당사자들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을 때라도 심의를 통한 동의에 이르는 목표를 공유하는 도덕적 행위자(moral agents)로서 상호 존중하도록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한다. 심의과정에서 호혜성이 작동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의견이 불일치할 때에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심의적 의견 불일치이고 다른 하나는 비심의적(non-deliberative) 의견 불일치이다.

32) Gutmann, Amy & Thompson, Dennis, 1996. Democracy and disagree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Chapter 6 on 'The constitution of deliberative democracy/ (pp.199-229).

33) 객준혁의 앞의 책 p. 224.

34) 객준혁, 2005. 심의 민주주의와 비지배적 상호성. 국가전략, 11(2): 146.

35) 호혜성에 대한 이하의 내용은 객준혁의 앞의 논문 pp. 150-151; Gutmann & Thompson의 앞의 책 pp. 2, 4, 14를 참조

전자의 경우, 즉 완전히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성격을 지닌 이슈들의 경우에는 상호존중이라는 호혜성이 유지되어야 하지만, 사회에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진 명백한 사안일 경우에는 다른 의견(예를 들면, 특정 인종을 차별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을 가진 상대방을 존중하는 호혜성을 나타낼 의무가 없게 된다. 정리하면, 심의 민주주의에서는 심의 내용에 본질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포함하게 되므로, 심의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호혜성이라는 조정원칙은 심의과정에서의 힘의 불평등을 해소해주며, 상호존중과 자발적 헌신에 이르게 해줄 뿐만 아니라 심의의 결과까지도 구속해주는 역할을 한다.

한편, 이런 조정원칙이 무리 없이 심의과정에서 적용되려면, 앞에서 제시한 다른 원리들이 함께 고려되고 작동되어야 한다. 그럴 때 호혜성은 건강하게 조정원칙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정치나 교회정치에서는 흔히 기본원칙(ground rules)이 될만한 조정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심의자체가 성립되지 않거나 심의결과에 대한 구속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불균형이 배태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경우, 왜곡된 교회정치문화가 짙게 되고 이로 인해 정치 혐오 내지는 무관심으로 가게 되며, 결과적으로 리더십의 권위상실에 이르게 된다. 힘으로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권위를 상실하게 만드는 근본적 원인이 되고 마는 것이다. 한국교회에서의 직분자간의 갈등, 목사과 장로의 갈등, 그리고 치리회라 불리는 당회, 노회 및 총회간의 갈등이 있을 때 이를 풀어낼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에서 제시한 원리들을 동시에 적용할 때, 그리고 특히 호혜성이라는 조정원칙을 지혜롭게 적용해보는 것이 해결을 위한 시작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교회법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정원칙을 가지고 갈등과 긴장을 풀어내고 화평을 추구하는 것은 교회법을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판단된다. 교회 직분자도 화평을 위한 것이다. 화평의 복음을 설교하고,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교인들을 권면하고, 사랑의 실천을 위하여 화평의 복음을 실행하는 것들이 직분자의 역할인 것이다. 시찰회와 노회, 그리고 총회가 존재하는 기본적인 목적도 교회의 화평을 위한 것이다.

그 외 제도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들은 헌정민주주의적 체제에 맞는 지배구조의 구축과 리더선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에 대한 제도화 등이 있다.³⁶⁾

3. 사람 (People): 직분자와 성도

앞의 전제와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게 되면 정치형태에 따라서 정치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달라진다. 가령 조직적으로 본다면 시장원리(market logic)에 기반한 시장 같은 조

36) 다른 중요한 제도 문제는 제한된 지면상 생략하려고 한다.

직이나 위계논리(hierarchy logic)에 기반한 관료제 조직보다도 공동체원리(community logic)에 기반한 공동체 같은 조직일 경우가 더 지혜로운 리더십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과 조화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미묘한 조직적 이슈들을, 특히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관리해야 하는 안목과 지혜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정치적 언어로 보면, 교회정치 형태에 따라서 리더십의 정치력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리더가 될 사람의 자격요건이 제대로 갖춰지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일깨워 준다. 한편, 정치적 성숙은 구성원들의 덕성이 갖춰져 있어야 가능하다. 나아가 구성원들의 참여의식이 형성되어 있어서 교회정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참여기회를 만들고 피드백 주는 적극성을 가지는 것이 요구된다.

IV. 교회정치 회복을 위한 제언

한국교회 정치의 저급성의 원인도 앞의 5P 모델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인식, 정체성 회복, 원리의 정리, 건강한 제도 구축, 그리고 참여자의 성숙 등의 관점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로, 목적의식이 불분명하거나 왜곡되어 있다. 앞서 설명한 성과와 관련해서 교회와 정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한 인식을 가지는 것이 우선 요구된다.


둘째로, 정체성의 상실의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한국교회의 정치문화의 문제의 출발은 정체성의 결핍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누구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등과 같은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에 고민을 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 이것은 아무런 고민 없이 주어진 체제와 전통, 그리고 관행에 따라서 행하는 이성의 마비와 전적 무사유를 연상시킨다.³⁷⁾ 또한 이성의 도구화로 인하여 현재의 나의 행동은 그저 앞에서 행한 선배들의 길을 따를 뿐이라는 변명만 하는 것에 불과하다(호르크하이머, 도구적 이성비판). 따라서 정치문화의 회복 출발점은 정체성의 회복에 있다고 생각된다. '내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했으니 내가 해도 된다는 정당화는 정당성이 확보되기 어렵다.

셋째로, 교회정치 원리의 부재, 잘못된 원리의 작동, 혹은 바른 원리의 역기능적 작동 등이 한가지 원인이 될 수 있다. 좋은 정치의 형성은 결국 좋은 가치의 공유에서 출발한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사랑, 정의, 평화 등의 가치가 깊이 공유되는 것이 필요하다.

네번째, 제도화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관의 작성, 의사결정 과정의 구축, 각종 회의 수준의 향상, 올바른 민주주의의 구축, 직분자와 지도자 선출과정 등 다양한 이슈

37) 한나 아렌트 (김선욱 옮김) (2006),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한길사)].

들이 대전제와 원리에 따라 정비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 다섯번째는 사람의 문제이다. 직분자의 경우는 자격과 선발과 관련된 문제가 크다. 신앙 없는 소위 문화적 그리스도가 제법 존재하는 것이다. 직분도 있고 열심으로 봉사도 하며, 헌금생활도 잘 하는데 신전의식(神前意識, Coram Deo)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사고와 행동을 하는 경우 교회정치는 무너진다. 영적 지혜와 분별력 없이 세속적 방법을 정치에 가져와서 인간적 수완으로 해결하는 것은 앞의 분석들에서 이야기 하는 대전제와 추구하는 성과와 맞지 않는다. 한국교회의 “정치력 빈곤”과 “정치훈련의 빈곤”이 많은 교회정치 문제를 야기시켰다면, 교회 직분자 선출과 지도자 선출은 매우 엄격해야 하며, 신앙인격, 전문성, 리더십(정치력)의 조화로운 구비가 요구된다. 

자발적 불편 이렇게 참여해요

한국사회는 과거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으나, 삶의 질과 행복지수는 더 빈곤해 지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시민인 우리가 먼저 이웃과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 작은 것부터 불편을 실천하고, 손해보는 삶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기윤실 자발적불편운동이 확산되도록 주위 분들과 교회, 직장, 학교에 알려주시고, 아래와 같이 참여를 유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발적불편운동”에 다음과 같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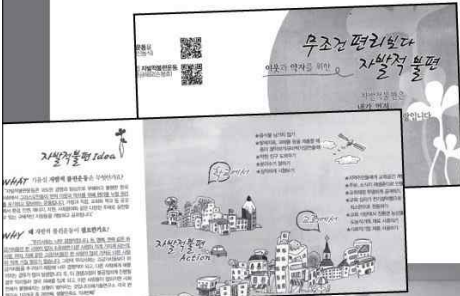
① 자발적불편운동 소개 영상 상영

- ☐ 내용: 다큐영상 “자발적불편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9분17초), Q&A영상 “자발적불편운동 이것이 궁금해요-손봉호”(12분23초)
- ☐ 예배나 부서모임 중 영상을 상영하여 이웃과 약자를 위한 자발적 불편운동의 핵심과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하실 수 있습니다.
- ☐ 유튜브에서 “자발적불편운동”으로 검색하시면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② 자발적불편운동 브로슈어 배포 (A4 양면 1장)

- ☐ 내용: 왜 자발적불편운동인가, 학교/교회/가정/직장에서 실천하는 자발적불편운동, 운동 정보
- ☐ 교회와 학교, 직장에서 자발적불편운동 브로슈어를 배포해 주세요. 근무하시는 곳에 오가는 분들이 자유롭게 가져가도록 비치해 주셔도 좋습니다.



③ 자발적불편운동 강의 및 워크숍 요청

- ☐ 소요시간: 60분~90분
- ☐ 내용: 강의/워크숍
- ☐ 주일 오후 특강이나 부서모임에서 자발적불편운동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교회와 성도들이 직접 참여하여 실천지침을 만드는 워크숍을 운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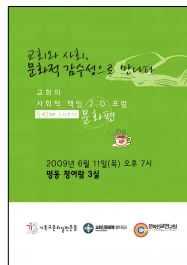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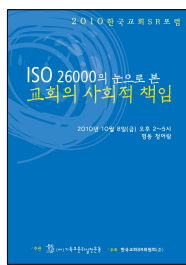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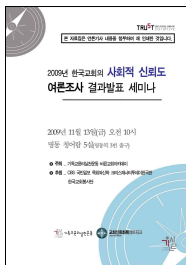


*자발적불편운동 한눈에 보기



기윤실 교회신뢰운동 관련 도서/자료집 목록(2007년~2012년)

범주	사업명
	사회적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심포지엄(2008.10) •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포럼 - 환경편(2009.4) •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포럼 - 문화편(2009.6) •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포럼 - 대안경제편(2009.9) •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포럼 - 교육편(2009.12) • 2009년, 2010년 교회의 사회적책임 컨퍼런스(2009.11/2010.8) • 2009년 한국교회의 사회적책임 보고서(2010.1) •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포럼 백서(2010.2) • 2010년 기독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2010.7) • ISO26000의 눈으로 본 교회의 사회적책임(2010.10) • 협동조합과 교회 심포지엄(2012.11)
	공공신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신학 책자 발간(예영, 2009.4)
	교회신뢰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교회 신뢰회복을 위한 대토론회(2007.5) • 한국교회신뢰지표 개발(2007.11)
	사회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1회~10회) •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하고 실천하기(대한기독교서회, 2001.4)
	신뢰도 여론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2008.11) • 2009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2009.11) • 201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2010.12)
	저작권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교회와 저작권을 생각한다 토론회(2007.5) • 저작권은 생활입니다 - 교회저작권 가이드 북 발간(2007.11) • 한국교회 저작권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포럼(2011.8)
	지역공동체 세우기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회와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세우기 운동(2011.5) • 교회와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세우기 운동(2011.11)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회재정운영규정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2008.4) • 교회재정세미나(2007~2012) • 기윤실 지속가능성보고서(20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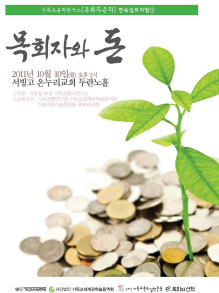
모든 자료집은 기윤실 홈페이지(www.cemk.org) 자료실에서 PDF 파일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단행본 제외)

기독교윤리연구소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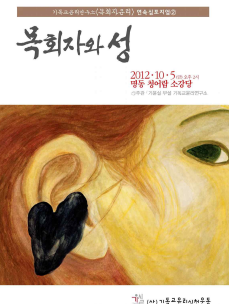
기독교윤리연구소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이론적 기초와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2005년 기윤실 부설로 조직되었습니다.

기독교윤리연구소는 작은 여우가 포도원 전체를 무너뜨리듯이 일부 중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물욕, 성욕, 명예욕의 노예가 되어 한국교회를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사회로부터 조롱과 지탄을 받는 것에 주목하여, 2011년부터 연속사업으로 목회자와 돈 문제(목회자의 경제윤리), 목회자와 성 문제(목회자의 성윤리), 목회자와 교회직분 문제(목회자의 교회정치윤리)에 대하여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분석하며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소 장 : 이상원(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
- 부 소 장 : 임낙형(성결대 기독교윤리학 교수)
- 총 무 : 고재길(장신대 기독교와문화 교수)
- 운영위원 : 임성빈(장신대), 신원하(고신대원), 이장형(백석대), 송준인(청량교회)
- 연구위원 : 강진구(고신대), 김동춘(국제신대원), 김승근(성결대), 노영상(호남신대) 박노옥(한국조세연구원), 추태화(안양대), 홍순원(협성대)
- 목회자윤리 연속 심포지엄 ① “목회자와 돈” ② “목회자와 성”



- 일시 : 2011년 10월 10일(금) 오후2시
- 장소 :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
- 주관 : 기윤실 부설 기독교윤리연구소
- 주최 : 기독교경영연구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목회와신학
- 기조발제 : 이상원 교수(총신대 신학대학원)
- 주제발제
 - ① 교회와 투자 : 박정윤 교수(영남대 경영학부)
 - ② 교회 재정사용의 원칙과 방향 : 황호찬 교수(세종대 경영대학원)
 - ③ 교회 직분과 돈의 관계 : 신동식 목사(빛과소금교회)
- 자료집은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일시 : 2012년 10월 5일(금) 오후2시
- 장소 : 명동 청어람 소강당
- 주관 : 기윤실 부설 기독교윤리연구소
- 기조발제 : 신원하 교수(고신대 신학대학원)
- 주제발제
 - ① 한국교회의 성도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김혜령 박사(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
 - ② 목회자의 성적 위기와 극복자원 : 하재성 교수(고신대원 목회상담학)
 - ③ 목회자의 성 스캔들 그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 고직한 상임대표(Young2080)
- 자료집은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www.cemk.org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윤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과 신뢰받는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민주화에 대한 열기가 절정을 이루던 1987년 12월, 손봉호, 김인수, 이만열, 장기려, 원호택, 이장규, 강영안 등 함께 성경공부를 하던 기독교인들이 뜻을 모아 시작한 기독교시민운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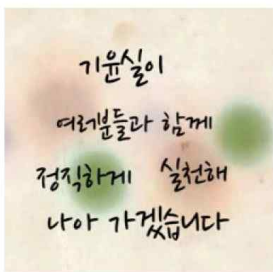
“아무리 정치·경제적으로 발전해도, 도덕적 수준도 낮다면 살만한 좋은 사회가 아니죠. 먼저 우리 기독교인이 앞장서서 사회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는 운동을 펼쳐보자는 뜻에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죠.” 이장규 자원위원(창립발기인)



기윤실은 지난 20여년 간 좋은교사운동, 기독교법률가회, 공명선거운동,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 공의정치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놀이미디어교육센터, 크리스천라이프센터, 대한민국교육봉사단 등 **우리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운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울러, 기윤실은 네트워크운동으로 기독교윤리를 각 지역 현안에 맞게 전개하기 위해 지역기윤실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윤실은 다시 하나님 앞에, 한국 사회 앞에 서서 묻습니다. **‘앞으로 기윤실은 어떤 운동을 펼쳐나가기야 하는가?’**



- “처음 정신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손봉호 자원위원장
- “하나님의 온전함을 사모하며 온전한 일을 하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홍정길 이사장
-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박은조 공동대표
-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백종국 공동대표
- “교회의 회복은 신앙인다운 결단과 실천을 할 때 시작됩니다” 임성빈 공동대표
- “이 시대의 절박함을 품고 나아가겠습니다” 전재중 공동대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함께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입니다. 기윤실이 여러분과 함께 정직하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기윤실 소개영상 바로보기

- **이사장** : 홍정길(남서울은혜교회 원로목사) ■ **공동대표** : 백종국(삼일 경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은조(분당샘물교회 담임목사), 임성빈(장신대 기독교와문화 교수), 전재중(법무법인 소명 대표변호사)

기윤실 운동은 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하지 않고, 개인·단체 회원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윤실은 1999년부터 외부 공인회계감사를 통해 재무적 투명성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 후원계좌 : 국민은행 037-01-0504-979 *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직접 후원약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140-011)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 Tel) 02-794-6200 Fax) 02-790-8585

E-mail) cemk@hanmail.net Twitter) @giyunsil Facebook) giyunsil **www.cemk.org**



본 자료집은 창조세계를 돌보는 마음으로
재생종이(양코르지, 그린라이트)에 인쇄했습니다.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www.cemk.org